

제422회 국회  
(임시회)

#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11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3)
4.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5)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6)
6.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5)
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7)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3)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1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6)
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1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1)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0)
17.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0)
2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0)
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0)
2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6)

2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6)
2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26.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2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29.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6)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7)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2)
3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3)
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8)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4)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1)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5)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3)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7)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9)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0)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3)
4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4)
4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4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4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5)
4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1)
4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7)
4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7)
5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5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4)
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5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7)
5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5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57.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1)
58.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5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6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6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3)
6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0)
6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6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6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6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6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6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5)
6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7)
7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4)
7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7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7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7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7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7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7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7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8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8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8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5)
8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1)
8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8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8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8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8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9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0)
9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9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9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9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3)
  9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9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7)
  9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9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4)
  9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0)
  10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7)
  1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3)
  10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4)
  10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10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10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4)
  1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9)
  10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109.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4)
  1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7)
  1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1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11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5)
  114. 군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화 및 노후된 차량 교체 및 군장병 수송은 일반 승합차로 이동할 것에 대한 이동 지침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정00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0)
  115. 업무보고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10
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10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3) ..... 10
4.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5) .....	10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6) .....	10
6.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5) .....	10
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7) .....	10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3) .....	10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	10
1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	10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6) .....	10
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	10
1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	10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1) .....	10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	10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0) .....	10
17.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	10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	10
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0) .....	10
2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0) .....	11
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0) .....	11
2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6) .....	11
2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	11
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6) .....	11
2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	11
26.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	11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	11
2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	11
29.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6) .....	11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7) .....	11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2) .....	11
3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3) .....	11
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8) .....	11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4) .....	11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1) .....	11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5) .....	11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3) .....	11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7) .....	11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	11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9) .....	11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0) .....	11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3) .....	11
4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4) .....	11
4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	11
4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	11
4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5) .....	11
4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1) .....	11
4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7) .....	11
4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7) .....	11
5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	11
5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	11
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4) .....	11
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	11
5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7) .....	11
5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	11
5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	12
57.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1) .....	12
58.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	12
5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	12
6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	12
6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3) .....	12
6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0) .....	12
6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	12
6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	12
6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	12
6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	12
6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	12
6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5) .....	12
6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7) .....	12
7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4) .....	12
7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	12
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	12
7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	12
7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	12
7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	12
7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	12
7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	12
7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	12
7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	12
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	12
8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	12
8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	12
8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5) .....	12
8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1) .....	12
8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	12
8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	12
8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	12
8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	12
8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	12
9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0) .....	13
9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	13
9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	13
9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	13
9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3) .....	13
9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	13
9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7) .....	13
9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	13
9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4) .....	13
9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0) .....	13
10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7) .....	13
1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3) .....	13
10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4) .....	13
10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	13
10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	13
10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4) .....	13
1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	13
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9) .....	13
10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	13
109.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4) .....	13
1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7) .....	13
1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	13
1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	13
11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5) .....	13
114. 군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및 노후된 차량 교체 및 군장병 수송은 일반 승합차로 이동할 것에 대한 이동 지침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정00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0) .....	13
115. 업무보고 .....	15
가. 국방부 소관 .....	15
나. 병무청 소관 .....	15
다. 방위사업청 소관 .....	15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3

(14시33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법률안 등을 상정한 후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입니다.

이렇게 성일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국방위 활동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군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군의 사기도 좀 높여 주고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 지역이 과학기술 도시이고 또 ADD가 바로 있고 해서 저는 국방기술이나 방위산업에 관심이 매우 많다 이 점을 특별히 홍보를 해 드리고 또 저에게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조승래 위원님은 3선 의원으로서 대전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해 오고 계십니다. 특히 지역구에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을 통해서 우리 기관들이 많은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외교·안보 쪽에서도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5선에 빛나는 윤상현 위원님께서 저희 국방위로 오셨습니다.

전에도 아마 국방위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윤상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윤상현 위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후반기에 잠깐 국방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국방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나 또 국방위원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감사합니다.

또 백선희 위원님께서 보임해 오셨습니다. 복지 전문가로서 우리 군 장병들과 관련되는 복지에 특히 관심을 갖고 세세히 챙겨 보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마 국방위원회에 이런 복지 전문가가 오는 것도 우리 국군 장병들한테는 굉장히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백선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인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군 장병과 군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또 성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의 수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를 비롯해서 각 군과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군이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첫 번째는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군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둘째, 저 출생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대응의 위기입니다. 셋째, 군과 그 가족의 생명·안전, 인간다운 기본적 생활 여건이 취약한 데서 오는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또한 국방력의 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과학기술 발달, 기후 위기, 세계 정세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5년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군이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체돼 있는 군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의 눈높이와 새로운 시각으로 국방정책의 전반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명예를 되찾고 군의 민주적 통제를 더 강화하고 특히 복지정책 전문가로서 저 출생과 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 그리고 군과 군 가족의 사회적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겠습니다.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군이 될 수 있도록,

떠나는 군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대한민국 군이 될 수 있도록 국방정책의 대전환을 2025년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원으로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감사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행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인 토론과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38분)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 사보임에 따라서 3개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인데 아직 국민의 힘 위원들 간 논의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 중 위원 개선에 관하여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3)
  4.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5)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6)
  6.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5)
  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7)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3)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1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6)
  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1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1)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0)
  17.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0)

2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0)
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0)
2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6)
2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6)
2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26.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2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29. 합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6)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7)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2)
3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3)
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8)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4)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1)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5)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3)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7)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9)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0)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3)
4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4)
4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4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4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5)
4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1)
4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7)
4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7)
5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5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4)
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5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7)
5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5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57.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391)
58.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5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6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6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3)
6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0)
6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6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6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6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6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6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5)
6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7)
7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4)
7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7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7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7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7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7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7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7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8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8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8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5)
8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1)
8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82)
8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8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8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8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9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0)
9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9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9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9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3)
9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9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7)
9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9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4)
9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0)
10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7)
1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3)
10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4)
10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10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10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4)
1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9)
10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109.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4)
1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7)
1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1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11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5)
114. 군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및 노후된 차량 교체 및 군장병 수송은 일반 승합차로 이동할 것에 대한 이동 지침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정00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0)

○위원장 성일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4항까지 113건의 법률안 등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박선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24년 12월 3일 실제 계엄이 이루어지기 3달 전에 발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상정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던 계엄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을 막기 위해 거듭 간곡히 요청도 드렸고 경고도 드렸습니다만 돌아온 것은 괴담, 정치 선동, 가짜 뉴스라는 비난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엄을 하게 되면 김정은만 행복하게 되는데 그런 걸 하겠느냐’라는 국가안보실장 당시 국방장관의 말씀도 있었지요. 당시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가능하겠느냐’ ‘군이 따르겠느냐’ ‘나라도 막겠다’라면서 조롱하는 듯한 호통까지 치셨지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대통령은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저희는 죽어도 본회의장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국회로 달려갔으며 간발의 차이로 간신히 막아 낼 수 있었습니다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계엄 선포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전, 이후, 양쪽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해외 입법례를 반영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과 같은 계엄이 불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들과 군 장성, 심지어 현장에 있는 현역 군인들까지도 모두 국민의 군대로서 나라를 지키는 데만 전념한다는 자부심이 더욱 커지고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제2의 남침을 한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단 30분, 1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전시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엄 선포 후에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인준을 받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지금 합참에서 발행한 계엄실무편람에도 분명히 되어 있듯이 입법부는 계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계엄 관련 표결이라든지 계엄 관련 중요 결정사항을 해야 할 경우에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12월 3일 계엄 당일,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불법 계엄에 여러 가지 종류

의 장갑차로 보이는 장비까지 동원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무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약 20만 발의 총알이 불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군 출입을 저지했습니다. 일상을 뒤로한 채 밤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주셨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국방이 더욱 튼튼해지고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강화하자, 대신에 적의 기습도발과 같은 전시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근거 있는 제안이다라고 감히 요청드리오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기관 업무보고 청취 후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좀 이따가 하시지요.

○강선영 위원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조금만 이따 하시지요.

○강선영 위원 지금 법안 발의하는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은 정정을, 속기록이 작성되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것을 마무리하고 제가 드릴게요.

---

## 115. 업무보고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14시46분)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15항 국방부·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분 주세요.

○강선영 위원 좀 전에 법안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법안 발의한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충분히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이게 속기록에 영원히 남기 때문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주변에 장갑차로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장갑차로 보인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왜? 일반 국민들과 과거에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장갑차가 아니고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제가 분명히 그것은 현재 육군이 사용하는 소형전술차량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장갑차로 보이는 것은 장갑차로 보일 뿐이지 장갑차가 아니었습니다.

탄약 20만 발이 불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정확한 수량도 맞지 않고, 두 번째로 이미 지난 국조특위에서 합참의장도 답변하셨고 많은 공수여단장들이 답변한 것과 같이 계엄이 발령되고 그 이후에 합참의장에 의해서 발령된 경계태세 2급의 자동조치부호 시행에 따라서, 각 부대가 자동조치부호에 의거해서 각 부대의 탄약고 내에 있는 탄약을 각 차량마다 일부 적재한 것은 비상계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별 경계태세 2급 조치라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 20만 발이 아닙니까?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것 가지고 하지 마시지요.

먼저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간략하게, 모든 기관장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5년도 국방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일련의 사태 이후에 군의 안정화와 대군신뢰 회복을 위해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방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진심 어린 지도와 조언에 감사드리며 조기에 군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의 국방정책 기조를 변함 없이 유지하면서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전념하는 정예선진강군을 목표로 25년도 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확고한 대북군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수행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방위태세의 기반 하에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고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미래 전장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미 신행정부 국방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동력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장병 복무여건 지속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환경을 만들고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조기 전환을 가속화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방산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방산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

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군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군의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국방부장관직무대행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방부 세부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안보정세 평가부터 결언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최근 안보정세 평가와 2025년 국방정책 추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국방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국방현안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후속조치와 25년 FS 연합연습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후속조치입니다.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연합 ISR 자산을 직접 운용하여 예상되는 북 도발 위협에 대비하면서 작전활동과 교육훈련, 기계획된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 국방 수뇌부와의 공조체계는 긴밀하고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으며 한미·한미일 국방고위급 협의체도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군 안정화와 신뢰회복 추진 사항으로 금번 사태와 관련되어 구속 기소된 주요 장성을 보직해임하고 출동 장병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간 확인된 문제점들을 심층 분석하여 국방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법과 규정에 기반하여 부여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25년 FS 연합연습 계획입니다.

올해 FS 연합연습은 우리 국방부와 한미 양국 참모단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위기관리를 통한 전쟁 억제 및 위기 완화는 물론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의 전구작전지휘와 전쟁수행절차를 숙달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실전적 연습 환경을 조성하고 연합야외기동훈련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결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인 작전활동과 교육훈련에 매진하며 군 안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 보완함으로써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전념하는 정예선진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김종철**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오늘 2025년도 업무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병무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경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 신축, 병역판정검사 수검복 개선, 사회복무요원 교육인원 확대 등 2025년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전달방법 다양화 등 법률안을 적기에 심사 의결해 주심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과 더불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 검사 한 번으로 바로 입영하는 제도의 준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 사회적 명예, 공정과 정의 등의 병역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방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병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병무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한 해 군 독자 정찰위성,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등 핵심 전력을 확보하였고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제도 확대, 방산 수출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 등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과 강건한 방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전력 및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획득체계 및 국방 R&D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의 성장세를 더욱 견고히 하여 미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비한 전방위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등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국방 우주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무기체계 획득에서 운용·유지까지 안정적인 획득과 성능을 보장하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획득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국방 반도체 육성 등 무기체계 독자 개발을 위한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과감한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수 방산 중소기업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방산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아 신수출 영역을 개척하고 글로벌 방산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2027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흥미루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홍미루 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또 간략하게 정리해서 짧은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대비한 전방위 대응능력을 구축하겠습니다.

확고한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F-35A 구매, 장보고-II 성능 개량 등 208개의 방위력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축을 위하여 한국형 3축체계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 우주 역량 강화를 위해 민·군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급변하는 전장환경 대응을 위한 획득체계 개선입니다.

무기체계를 신속 획득하기 위해 국외 구매와 국내 연구개발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사업 절차를 신설하고 분석실험·소요검증·선행연구를 통합하는 통합소요기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소요 요건을 추가하고 긴급소요 전력을 신속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의약품 맞춤형 획득 절차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 가속화입니다.

무기체계 독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개발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방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며 엔진 시험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대 국방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유·무인 항공무기체계 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국가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 강화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방위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급망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방산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불확실성을 기회로 방산 4대 강국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 맞춤형 방산 수출 패키지를 먼저 제시하는 능동적 마케팅으로 수출 품목 및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MRO 시장 본격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범정부 지원팀을 구성하여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업체 간 공정경쟁 및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공정경쟁협의체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홍미루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하나님 국방위 차원에서 요청을 하면 지금 다 무기체계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업그레이드도 많고.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산하에 있는 ADD를 포함해서 이런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또 신기술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게 5년 갈 게 예를 들어서 3년 내에 끝냈다 그러면 인건비나 경비가 굉장히 많이 줄잖아요. 주는 금액 일정한 부분을 과감하게 연구자들한테 성과급으로 주시는 제안을, 대안을 좀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가 예산의 대폭적인 절약도 이를 수 있는 목표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20억, 30억 받는 연구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한국의 무기체계나 또 수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투자기관, 다른 기관에서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인센티브제를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질의 순서에 따라서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과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려고, 그거는 팩트 체크니까.

○추미애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좀 전에 박선원 위원이 법안 설명을 한 내용 중에 팩트 체크를 강선영 위원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방사가 그날 타고 온 차량은 신형 소형 전술차량으로 보여요, 전술차량 같은 것들. 이 차량은 사실은 방탄 기능을 장착한 차량입니다.

방사청장님, 맞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방탄 기능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박선원 위원이 조금 전에 한 거는 장갑차로 보이는, 방탄 기능은 장갑 기능과 동일한 말입니다. 장갑 기능이 있는 차량 맞지요, 사업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방호력이 상당히 뛰어난 차량은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장갑 기능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것이 장갑차인지 장갑 기능이 있는 신형 전술차량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리고 박선원 위원은 정확히 ‘장갑차와 비슷한’ ‘보이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가지고 장갑차냐, 아니냐 이건 군인들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일반 시민의, 국민들의 눈높이로는 장갑차라고 해도, 군사적인 거는 다르지만 장갑 기능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비슷한 거지요.

그다음에 탄약 20만 발도 이번에 계엄이 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경계태세 2급, 경계태세 2급은 적이 도발할 때 하는 기능인데 한 거지요. 그러면 경계태세 2급이 전군에 걸렸는데 전군에 탄약이 불출된 양을 따지면 수백만 발, 아니, 전군에 불출된 탄약은 수천만 발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따 한번 군에서 전군에 불출된 탄약이 몇 발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비상계엄이 장기화됐으면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로 이것이 장갑차냐, 아니냐. ‘장갑 기능이 있는 차량’이 정확한 표현이지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말꼬리를 잡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김병주 위원 우리가 국방위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위원님들 이 부분에서 정리해 주시고.

추미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채 해병 관련해서 직무대행님, 방첩사에서 첨보 수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일체를 주십시오, 사고 동정에서 재판 진행 과정까지 방첩사의 첨보 수집자료.

두 번째도 방첩사 관련입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비밀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차일지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역시 방첩사 관련입니다. 방첩사가 수억 원대의 지휘활동비, 국정원 특활비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 제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거부하는데 차관님, 방첩사 재정 혁신 TF 운영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대면보고를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첩사 관련인데요. 신원보안실에서 생산한 문서 목록,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12월 까지 사이에 생산한 문서 목록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국군수도병원 서울지구 병원의 시설 개보수 현황,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 만 4년이 되겠지요. 그 사이의 개보수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허영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비화폰이 다양한 불법·위법적인 계엄, 내란 사태를 선포하고 유지·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기기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육군에서 쓰던 비화폰의 상당수를 국방부로 관리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전환의 규모와 관리전환 사유 그다음에 지난 5년간 육군 비화폰의 관리전환 사례 그다음에 비화폰의 폐기 현황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화폰에는 일련번호와 증명서가 있어서 관리전환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관리전환된 비화폰의 관리전환 내역 그리고 육군에서 각 군으로 비화폰 관리전환을 위해 시달한 관련 문서 사본 그리고 국방부, 육군에서 가지고 있는 비화폰 관리 운영 관련 규정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해병대 신임 사령관이 와 계신가 보네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처음 봤는데 인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해병대 신임 사령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임 해병대 사령관 주일석 중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병대 전 장병 및 군무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백령도·연평도서군을 포함한 김포·강화 지역 그리고 포항·제주도 지역까지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사령관으로서 국민들께서 생업에 편안하게 종사하실 수 있도록 완벽한 작전 대비를 하면서 국가 방위를 수호하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함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병대에 근무하는 장교 및 부사관·병들이 해병대에 대한 역사와 전통,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받은 젊은이들이, 아들과 딸들이 건강하게 복무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님들의 해병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 질의를 하실 때 수고하고 계신 장병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많이 듬뿍 담아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금 장관도 국방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한대행이 임명하기는, 대행의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들이, 여야 위원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신데 대행의 대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임명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들이 이런 상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국방부장관이 조속한 시간 내에 임명이 돼야, 군이 지금 사령관들도 많이 비어 있고 또 개혁 과제도 있고 그래서 여야 위원들이 함께 의견을 좀 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간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시12분)

○위원장 성일종 질의를 하기 전에 소위원회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마무리되어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대통령권한대행 그다음에 각 장관의 직무대행 그다음에 대리, 사령관대리 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 부처가 공히 그런 상황이지만

국방부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참모총장, 2작전사령관 그다음에 육군교육사령관, 방첩사 그다음에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 총 7명에다가 지금 장관까지 하면 8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방 또는 군의 주요 리더십들이 부재한 것이 제한이 없다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특히 군 리더십들이 부재된 것이 장기화되는 것은 사실 우리 군의 대비태세라든지 이런 것에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기에 해결되는 것을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두 달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임무 수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전투준비, 교육훈련, 부대관리라는 이 세 축을 항상 실전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결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리체계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더십 발휘에 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종득 위원** 방금 국방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방부장관도 지금 두 달간 공석으로 있는 상태에서 대리체제로 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민주당에 여야정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임명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대행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현재 국방부장관님의 부재는 사실 앞으로 저희가 해쳐 나가야 될 국방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도 국방장관이 빨리 세워져서 정상적으로 국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참고로 장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바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 검증의 문제, 청문회 문제 이런 것들이 최소 한 달 이상 또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주요 사령관들이 대리체제로 가고 있는데 현재 임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사실 임명에 대한 건의를 저희가 좀 하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장관 임명과 연계해서도 한 달 이상 더 딜레이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합참의장님!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합참의장입니다.

○**임종득 위원** 군사대비태세 이상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대비태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군사대

비태세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번에 합참에서 조직 개편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30여 년 동안 유지해 오던 각 본부의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고 하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추진한 배경은 지금 업무의 미래 환경에 대비하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전문성 있게 구분하기 위해서 기능을 조정해서 본부를 형성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토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1년 전부터 토의를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약 1년 정도 토의를 해서 최종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조직 개편을 검토하면서 우리 국방위원회에는 한 번도 보고하거나 설명해 준 적이 없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조직 개편이 되고 사실은 주요 분들께 작년에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렸고, 12월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기간이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 좀 지연됐던 상황입니다.

○**임종득 위원** 국회에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받아 봤는데?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간사분들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게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우려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전본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현행작전과 장차작전 그다음에 연습부가 딱 뮤여 가지고 자연스럽게 돌아갔는데 장차작전을 맡고 있는 작기부가 전략본부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과연 연계성 차원에서 이게 맞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고, 전략본부에 있던 전력기획부가 별도의 전력본부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전략과 전력이 긴밀하게 전발부하고 연계돼 가지고 가던 부분이 본부가 나뉘지는 문제의 우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JMS가 합참의 최상위 문서인데 그것을 전략본부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JMS의 기능 자체가 작전에 대한 지침과 전력 발전에 대한 일반 지침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기존에 긴밀한 협력이 되던 조직 자체가 좀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저희들이 구분하는 것은,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략본부 그다음에 작전본부 그다음에 전력본부 이렇게 구분되고 정보본부는 지금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본부는 합동기획체계를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 작전기획 그다음에 전투발전을 수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력을 건설하고 소요하는 것은 전력본부로 해서 거기에 미래 과학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장기적인 소요를 결정하고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 전문성을 구비하는, 특히 미래 AI라든가 과학기술 분야들이 순차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전본부는 실행력, 현행의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의 기능을 좀 보강하는 개념으로서 형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본부장들하고 과장들, 전체 인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업무의 효율성도 가져야 되고 조금 균형감 있게 가야 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조직 개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물론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을 바꾸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보완하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직무대행님,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전군의 심리치료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지금 그 이후에 투입됐던 장병들 개인 심리검사 또 심리지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심리치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병들한테 이를테면 계엄법이라 할지 헌법이라 할지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장병들한테 하는 군법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고 전 장병이 거기에 대한 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폭넓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심리치료 위주로……

○**안규백 위원** 그러면 지금 육군만 합니까? 해군·공군·해병대도 같이 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안규백 위원** 심리치료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거기에 투입됐던 병사들 위주로, 장병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군을 하나의, 한 덩어리 조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해공군 전군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래서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계엄 사태 때 투입이 됐던 장병들하고……

○**안규백 위원**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치료를 실시해 주고 그 나머지 여타의 다른 군 조직들도 같이 해 줘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 박안수 육군총장 보직 해임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지난 번 2차 청문회 이후에 지금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마는 오영대 인사기획관한테 현행 법령으로도 보직 해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장관대행께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아무런 조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말씀과 또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보직 해임은 현행 법규로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안규백 위원** 아니, 상급자가 3명인데, 김선호 장관대행이 상급자이고 합참의장이 있고 또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 있는 법무장교, 3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로도 가능하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런데 저는 지금 장관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보직 해임심의를 결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심권자가 심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법리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포함 안 된다는 법리적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그러면 다른 법무장교로, 만약에 그게 제한적인 요건이 된다면 다른 법무장교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법무장교는 지금 규정상 1명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안규백 위원** 박안수 총장이 지난 청문회에 나와서도 위증을 했는데요. 계엄 당시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한테 ‘넌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냐’라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계엄에 적극적 관여된 정황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당시 박안수 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본이 매뉴얼도 없고 계획도 없고 훈련도 안 하고 있는데 합참 계엄과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려 주냐, 일의 순서가 육군본부를 불러 올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계엄과에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매뉴얼 이런 걸 나한테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 박안수 총장은 합참 계엄과장의 계엄 해제 건의에 대해서 과장이 계엄 해제 건의를 하니까 ‘일머리가 없다. 그런 것을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이렇게 상반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연히 박안수 육군총장은 2차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모의했던 정황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방사에 추가 인원을 확인했고 2사단 인원에 대해서도 가능성 여부를 문의했고 또 육본 장성 13명, 영관급 21명, 34명의 버스 출동을 시켰고 여러 가지……

우리 군에 이렇게 2차 계엄까지도 모의한 사람을 육군총장으로 앉혀 놓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자가 지금 육군총장에 앉아 있다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수치입니다.

그것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말씀하신 내용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들은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 육군총장에 대한 후속조치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한 법규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기소휴직을 시켜서 직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방안으로 가능하다는 참모 조언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국조특위 나와서까지도 위증을 하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아마 수사 과정에서 그게 정확히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그러면 합참 계엄과장이 거짓말, 위증을 했다는 얘기예요, 진술을? 그건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합참 계엄과장의 진술을 좀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

○**안규백 위원** 어쨌든 방도를, 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건 청장님, 작년에 K-방산의 실적이 어떤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작년의 수출 액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규백 위원** 예.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약 100억 불 조금.....

○**안규백 위원** 저조하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안규백 위원** 2022년에 173억 달러, 23년에 135억 달러, 작년에 약 94.5억 달러입니까, 규모가 94억 달러쯤 되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안규백 위원** 그렇게 되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안규백 위원** 연이어 두 해 이상 이렇게 실적이 감소했는데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좀 필요해진 시점이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먼저 작년에 액수가 그 전년보다 좀 축소된 것은.....

○**안규백 위원** 지금 미국, 일본, EU 같은 주요 나라들은 방산산업국의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도 단순히 수출 실적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K-방산에 대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될 그런 분기점이 아닌가 싶어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발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만 되어 있지, 이를테면 국방과학혁신 기본계획에서 국방전략 10대 분야, 30개 기술 이 과제 선정만 되어 있지 지정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한 수준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방위산업기술 중에 국가전략기술이나 첨단기술로 지정된 게 뭐가 있지요?

하여튼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방위산업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놨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청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이 내신 그 법을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잘된 좋은 법안이니까 청장님, 아주 빨리 조속한 내로 검토를 하시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2월 3일 내란 당일 24시경에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에게 첫 번째 하달한 지시사항이 군인 4명의 이름을 불러 주면서 확인하라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들 군인 4명 모두는 군판사였는데 그중에서 모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이었고 김 중령과 김 소령은 박정훈 대령 재판 주심과 배석판사였습니다. 그리고 윤 중령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23년 9월에 기각한 판사였습니다. 윗선의 지시로 여인형 방첩사령부는 정권에 밀보인 군판사에 대한 동향을 수집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기각한 윤 중령의 경우는 통상 1년 6개월 정도의 보직 기간이라야 다음 발령을 받는 것인데 보직된 지 겨우 일곱 달 만에 다른 지역으로 보직 변경됐습니다. 아마도 영장 기각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봐집니다.

고 채 해병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800-7070 의문의 전화 수십 통,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전방위적인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고 군검찰의 잇따른 표적수사 그리고 이제 드러난 것처럼 방첩사의 군판사 동정 수집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총체적으로 국가권력이 개입한 탄압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19개월 넘게 무보직 상태인 박정훈 대령을 조속히 복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군사법원의 판결로 결백함이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원직위에 복직되어야 정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1심 군사법원은 ‘대통령 격노 등 외압과 관련하여 불법 명령을 내린 이종섭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극적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박정훈 대령의 기자회견 내용까지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추가 기소한 것은 박정훈 피고인의 권리를 중대히 침해한 것으로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의혹이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수사, 자의적 기소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종섭 장관의 명령은 기존에 보고받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진 것으로서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1심 판결이 매우 단호하게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것이 상급심에서 변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직무대행님, 이 복직 축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군사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검찰에서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복직 여부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봐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당장 복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권위가 이렇게 복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확정판결 이전에. 인권위는 2009년 7월에 무죄를 선고받은 군인을 계속 휴직시키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복직시키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걸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에 대한 심리적 동요를 막기 위한 회복 조치의 필요성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불법 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인들을 지휘했던 사령관들을, 사령관들의 현장 판단을 현명하게 도왔던 바로 그 지휘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부하 장교들이. 그들이 무기 사용을 자제시켰고 또 대통령이나 장관의 추가 병력 투입을 재촉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언을 주었고 또 더 이상의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선관위 서버 침탈 등에 대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제동을 건 것 역시 법무참모 같은 그런 부하 장교들의 현명한 판단이 주효했다 봐집니다.

그렇다면 군의 심리적 동요를 막는 것, 빠른 회복 조치야말로 참군인 박정훈 대령이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무죄라고 하면 빠른 복직 조치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주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회복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관련돼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처럼 검찰은 또 관련된 법안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항소를 진행을 시킨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항소한 것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복직을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항명에 관련된 것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심보다는 또 나오는 상위 법원에서의 판단이 앞으로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위 법원의 판단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아, 부당한 명령이라도 우선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더 심리 회복이 어렵습니다. 무슨 특단의 심리 회복 조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로운 것을 정의롭게 용기 있게 할 줄 아는 그 빠른 판단, 그것 직무대행님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인권위의 권고사항 알려 드렸지 않습니까? 무죄를 선고받은 군인을 계속 휴직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것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요. 방향을 드리는 겁니다. 촉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정국은 지금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도 우리 국군은 전방에서 후방에서 그리고 하늘과 바다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전사 예하의 일부 부대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평상시의 4배 정도가 된다고 언론 보도가 난 걸 보고 정말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큼 아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 심리치료만 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데서도 회의를 갖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인들이, 수사개시 통보서를 받은 인원만 3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29명입니다.

○**한기호 위원** 29명, 그러니까 약 30명 정도가 받고 있고 지금 그 외에도 참고인 조사

를 포함해서 또 많은 인원이 수사 대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군 중간간부까지 중요한 내란 임무의 종사자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첩사 체포조 편성과 운용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군 중간간부인 방첩사 전 1처장 그리고 수사단장 이 사람들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명령을 수행할 당시에 위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현역 군인들이 얼마나 판단할 수 있었는가? 누가, 판단에 조언을 해 줄 사람이 있었는가? 이러한 환경을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운명처럼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결혼하려 갈 때도 명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놓담 삼아 합니다, 결혼도 명령이라고까지. 이러한 군인들에게……

군형법상에 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항명죄의 경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할 경우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한 인생을 완전히 끌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대법원은 1997년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반란죄 사건과 관련돼서 ‘여기에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해서 내란집단을 형성했고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서 내란을 실현시키려고 했었다’ 이렇게 했으나 당시에 중간 제대 이하의 군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들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차관님도 내용을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장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과거의 12·12 때의 판례를 보더라도 군인들을 이제는, 그런 족쇄에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은 군의 전투력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인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 요소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중간 제대 이하의 장교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이러한 족쇄에서 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명령, 부당한 명령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자의 명령이 내려오면 명령을 수명하는 것이 군인들의 하나같은 운명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법의 잣대로만 처벌한다면 실제로 군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오죽하면 1개 부대의 명예 전역 신청자가 4배로 늘었겠습니까. TV를 보는 국민들께서도 이런 점을 정말 군을 사랑한다면 감안하셔야 되고 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그리고 재판을 하는 판사님들도 반드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 항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의 승객 175명, 승무원 4명이 포함돼서 17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을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군 공항은 지금 문제가 없냐,

버드 스트라이크 하는 데 대한 대비책이 되어 있느냐? 그런데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비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공항 하나밖에 없지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군은 여기에 대한 것을 진단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 사건 이후에 저희 군 공항에 관련된, 먼저 방위각 시설들이 있는 곳이 한 6개 공항에 있고요. 그 시설들이 한 8개 되는데 점검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또 보완해야 될 소요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들을 검토하고 이걸 개선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먼저 F-35 1대가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해서 손상을 입고 지금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F-35 한 대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방사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1000억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1000억 이상 되지요. 그래서 지금 철새나 뭐 토종 새들에 의해서 공항의 이착륙에 방해가 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돈이 들더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이렇게 고가의 우리 군 전투기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김선호 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실탄 수가 몇 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저희가 파악해서 약 18만여 발로 국정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에 적힌 실탄 수를 합해만 봐도 5만 7735발 정도가 됩니다. 수만 발의 실탄 중 단 한 발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천만 다행이지만 그 일을 다행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제복을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중은커녕 평생 군에서 헌신한 4성 장군, 3성 장군들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게 만들었고 가족들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 차고 불려 다니게 만든 장본인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참담합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재판정에서 윤석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다. 기재부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건네 준 사실도 없다.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다’, 오리발도 이런 오리발이 없습니다.

정말 비상계엄 동원으로 사기가 크게 떨어진 이 군 문제 심각합니다. 사기로 먹고사는 게 사실상은 군인데, 여하튼 저도 정말 이런 군에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빨리 정상화됐으

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직무대행으로서,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예결위 간사인 저한테 직무대행인께서 오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허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그래서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국방부의 2025년 전력운영비 증액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당직근무비 인상,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작전·훈련 간 간부급식비 증액, 민간위탁급식사업 보조비 신설, 이사 화물비 현실화,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단기복무장려수당 인상,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 단가 인상, 주거환경 개선비 신설,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 소대지휘 활동비 인상, 정확하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2025년 반영된 예산이 1조 5490억 정도됩니다. 여기에 4931억 증액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이것 사실상은 기재부에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액 요구를 하셨던 사항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허영 위원** 이것 우리 민주당이 삭감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증액…… 뭐 민주당이 삭감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허영 위원** 여기서 우리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논의가 되지 않아서 증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요? 기재부 정부 당초 예산안에 증액 편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방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런 거짓 뉴스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힘 위원들이 이런 거짓 뉴스를 가짜 뉴스하고 꽝꽝 퍼뜨리고 있어요.

직무대행님, 최근 기재부에서 각 부처의 추경 소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도 소요조사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닙니다. 지금 그 사항은 추경 관련된 소요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영 위원** 않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허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도는 기재부에서 소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는 제가 뭐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군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단기적 대책으로 반드시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추경 편성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저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소요조사가 온다고 한다면.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저도 국회에서 추경에 반드시, 전액은 다 힘들겠지만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선호 직무대행님.

다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합동참모 지휘통제실에서 비상계엄 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을 방문하기 전에 즉 새벽 1시 30분까지 전화기 2대를 번갈아 가며 통화한 것으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공소장에서 언급이 되어서 사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휘통제실에 최상목 대행이 방문할 때의 사진인데 저기에 김용현이 앉고 양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셨습니까? 그때 새벽 1시 30분 전까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치는 다르지만 대략 저런 형태로 지휘통제실에 이렇게 다……

○**허영 위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도 저렇게 앉아 계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허영 위원** 저렇게 앉아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 말고 김용현 장관이 앉아서 전화기 2대로 통화했던 그 현장의 기억이 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전화를 하고, 계속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

○**허영 위원** 기억나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허영 위원** 그리고 혹시 오늘 출석한 여러 국방부 관계자 중에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통제실에 오기 전까지 통제실에 계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직무대행과 의장님은 계셨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허영 위원**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직무대행님부터 여쭙겠습니다.

그때 김용현 장관이 통화 시에 혹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없습니다.

○**허영 위원**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허영 위원** 김명수 의장님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전화 통화를 하실 때 이렇게 들고 하면 옆에서 그렇게 잘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가 언론에 제보하기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화할 때 김용현 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김용현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사실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김용현이 부른 이름을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옆에 앉아서?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제 기억으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허영 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직무대행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황희 위원** 장관 빙 자리를 그래도 잘 채워 가면서 잘 수습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고 계신다 이런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황희 위원** 그다음에 재판도 받아야 되고 현재 심판도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헌법기관을 불법적으로 통제하고 또 불법 난입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등의 체포를 시도하고 또 명령하고 이런 위헌적·위법적 사유로 구속된 거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진술하는 것 보면 자기는 무장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군에. 그런데 실탄까지 불출되고 총 들고 막 헬기 타고 국회로 들어왔다는 것은 최고로 신속하고 빨리 진입하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버스 타고 오거나 장갑차 타고 왔겠지요. 헬기를 타고 여섯 대가 국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신속하게 시간을 다투며 뭔가 빨리 진압하라 이것 아닙니까, 총 들고 실탄까지.

그런데 대통령은 무장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요원들을 밖으로 빼라. 군인들도 아니고 요원들을 밖으로 빼라, 안에 요원도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군은 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던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 국군통수권자는 하지 말라고, ‘무장도 하지 말고 국회도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이 항명한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군이 대통령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군이 대통령을 구속시킨 거예요. 아니, 대통령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군은 무장한 채 국회를 난입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 항명이에요, 쿠데타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진술은 저희들이 뭐,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황희 위원** 제가 꼭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한 건 아닌데 어이가 없어서 질의한 겁니다.

국군통수권자면 설사 자기가 안 해도 내가 했다고 해야지 자기가 한 것을 밑의 사람한테 다 이렇게 전가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통수권자예요. 원래 우리 직업으로 이렇게 죽 보면 제일 신뢰가 높은 직업이 누구였냐면 군인이었어요, 군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제일 꼴찌는 누구냐? 그것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신뢰도 1위인 우리 군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탄약이 탄약고에서 출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엄 시 탄약이 불출되고 현장에 지급되는, 실제 막 사령관들 이런 분들이 ‘탄약을 개인 지급 안 하고 내가 차에다 실어서 한꺼번에 저기 모아 놓고 내가 가져왔다’, 원래 그러는 겁니다. 원래 탄약이 현장에 지급되면 가지고 있다가 현장 지휘관이 때에 따라서 단계별로 개별 지급하는 거예요. 현장에 탄약 가지고 간 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탄약을 개별적으로 지급 안 했다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 탄약을 공식적으로 무기고에서 써도 좋다 이 명령을 누가 합니까? 명령을 누가 해요? 누가 명령했으니까 탄약을 쓰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탄약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황희 위원** 예.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탄약을 사용하는 것은 현장 지휘관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현장 지휘관이 아니라 계엄군이 탄약을 들고 현장을 갈 수 있다라고 맨 처음에 최초로 명령을 하는 건 계엄사령관 아니에요, 계엄 시에? 계엄사령관이 명령도 안 했는데 현장 지휘관이 탄약 실탄 들고 국회까지 들어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계엄사령관이 탄약을 휴대하라고 지시했다고 지금 진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확인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아니아니, 탄약을 무기고에서 출고하라고 맨 처음에 명령 내리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전군에다가 탄약을 출고해도 좋다라고 훈련할 때, 사격할 때 출고 명령을 할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하고? 그러면 출입대장이 있잖아요. 탄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적법하게 사용했냐 안 했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건 아마 사령관들이 출동하는 것에 대한, 출동 인원 장비에 대한 지침을 주지 않았……

○**황희 위원** 직무대행님, 실탄이 탄피 하나가 없어져도 난리가 나는 판에 지금 20만 발이나 되는 탄약이 출고됐는데 이걸 설령설령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을 통제하는 사령관……

○**황희 위원** 누가 맨 처음에 탄약을 써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되고 수사 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령을 안 내렸는데 탄약을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부대에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내린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엄사령관이 내린 것인지, 현장에 사령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황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탄약을 가지고 나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누가 내린 것인지 몰랐는데 무기고에서 탄약이 나가고 그 탄약을 현장 지휘관이 현장으로 가져가고 이

랬단 말이에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니, 그러니까 그 사령관들이 아마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사령관이 어떻게 지시를 해서 탄약을 갖고 나가냐고요. 계엄 시에 사령관이 탄약을 불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니까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우리 군부대들이 투입될 때 그 상황이 되면 SOP에 의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그 부대들은 기본적인 휴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황희 위원** 직무대행님, 지금 부대 한두 군데가 탄약을 쓴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탄약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이 발동되면 계엄 때 탄약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명령을 계엄사령관이 내리고 그 명령이 전군에 전달되면 그러면 각 부대 사령관이 ‘우리가 이만큼 탄약이 필요합니다’ 요청을 하고 그 문건에 의해서 계엄사령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 탄약을 출고받아 가지고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출입대장에 보면 탄약을 사용해야 될 사유, 대상, 탄종, 수량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가 그것도 확인 안 해요, 내부 문건인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그것은……

○**황희 위원** 탄약출입대장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부대가 임무를 받아서 특정 지역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휴대해야 되는 장비, 탄약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대들은 그 SOP에 의해서 휴대를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출동하라는 명령은 사령관이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함의한다고 보고 휴대를 했지……

○**황희 위원** 아니, 출동하면서 탄약을……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탄약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황희 위원** 이것은 광주 때도 마찬지입니다. 광주 5·18 때도 탄약을 갖고 가서 그걸 다 모아 놓고 있다가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탄약 지급되고 작동하고 사용한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람 없고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황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황희 위원** 탄약을 현장으로 가져간 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장에서 탄약을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님.

○**황희 위원** 그건 결과지요.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결과라고요. 결과적으로 사용 안 했고요.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러면 결과가 모든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지……

○**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황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성일종**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군이 출동을 할 때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가게 되는 장비가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휴대한 것은 의무상 작전이 이동할 때 휴대하게 되는 기본적 매뉴얼에 의해서 갖고 갔고 사용은 안 했다 이 얘기로 정리하면 되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희 위원** 아니, 대통령이 무장을 하지 말랬는데 총하고 실탄을 왜 가져갑니까?  
.....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직무대행, 고생이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해 마지않는 허영 위원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고 간혹 이야기하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 예산에 대한 삭감 문제는 어느 의원도 입에 올린 적이 없고 타 예산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혹시 허영 위원께서 잘못 곤혹을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대행, 트럼프 대통령 2기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금 기대도 크고 또 우려가 상존되는 그런 것도 사실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의,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국방부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변함이 없습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인정 할 수도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국방부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언론이 번역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핵보유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뉴클리어 파워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희는 보유보다는 핵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일반적 수준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미 신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NPT 회원은 아니지만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 등과 같은 수준으로 예우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직무대행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최근에 나왔던 언론 보도에도 있지만 최근에 미 일 정상이 만나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기준의 입장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인도, 파키스

탄 같은 상황에서의 인정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데도 김정은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핵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새 계획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핵 무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방향 설정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희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고도화시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미 행정부에서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에 전념할 뜻을 밝힘과 동시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미 일 정상회담에서는 보면 북한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 이 두 발언이 서로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미 측에서의 발언이고 취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 문건 문건을 다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강대식 위원** 현재 보면 미국의 공화당 강령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사라진 것 대행께서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강대식 위원** 1기 시절의 그 강력한 의지도 살펴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아마 핵물질을 옮길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가장 위협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미 행정부에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하고 있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이 싱크탱크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동결 내지는 감축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위협하는 것만 제거하는 수준으로 협상을 하자는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 봤습니까, 대행께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런 얘기 들었고 또 반면에 그것과는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미국에서 대북 협상을 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런 것도 가능한 여러 가지 옵션 중의 하나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없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도래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우리는 무엇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놔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그렇게 가정하거나 예단하는 것 자체가 정책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미 신행정부의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기존의 저희들 정책들 또 한미에 대한 동맹, 협력들을 지속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본은 트럼프 1기에 비교해서 방위비 분담을 2027년까지 2배로 늘리기로 약속을 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건 좀 정확히 표현하면 방위분담금을 2배로 늘리는 게 아니고요 방위비를 2배로 늘리겠다라는 그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강대식 위원** 방위비, 만약에 이렇다고 봤을 때 미국 우산 아래에 존재하는 우방국가들한테도 이런 파급적인 영향이 혹시 미치지는 않을까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가능한 옵션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존의 12차 협의 때 저희들 입장과 충분히 협의가 됐고 그것이 미국 의회에서 여러 가지 다 비준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혹시나 재협상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우리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내지는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함 건조 능력도 많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또 MRO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반대급부적인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아직 미 측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대식 위원** 아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한미 간의 협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최선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김선호 장관직무대행님,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위기이고 군도 대단히 위기라고 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김용현이 군을 이용해서 내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있고 군도 무너지고 있지요. 사실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겠고 또 한 피해자는 선량한 우리 군 장병이라고 봅니다, 실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 세우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장관대리도 저하고 동시대에 살았는데, 12·12 쿠데타로 인해서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당히 잃었잖아요, 그 당시에?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김병주 위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장관대리님이나 저나 40년 가까이 절치부심을 해왔고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12·3 계엄 이전까지만 해도 계엄 명령을 내리면 군이 안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국민들 머릿속에서도 있었고 대다수 있었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12·3 내란 이후에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무너져 버려서 참, 앞으로 이걸 회복하는 데 저는 한 20년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12·12 쿠데타가 한 40년 걸렸는데 당시에는 5·18 민주화항쟁 때 엄청난 희생자가 생겨서 더 오랜 세월이 걸렸고 이번에는 그나마 물리적인 피해는 없지만 심리적인 피해가 크니까 한 반 정도는 걸릴 거

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로서 이재명 대표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최근 이재명 대표 메시지, 페이스북이나 또는 실제 어저께도 대표연설을 했는데 이런 걸 봤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은 보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저께 교섭단체대표연설에도 군 관련 메시지가 있었는데 봤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들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한번 보시지요, 혹시 군에서 또 정치적인 중립을 이유로 이런 걸 못 봤을 것 같아서.

지난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 이건 비상계엄 이후에 출곧 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군인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몰상식적이고 반국가적인 계엄 지시라도 군의 특성상 항명은 결코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했지만 계엄을 무위로 그치게 한 핵심은 불법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군장병의 양심과 용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 2주 전에 냈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내용 동의하시지요, 이것은 당을 떠나서?

그다음 메시지 한번 보시지요. 어저께 국회 대표연설에서 냈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군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민주당 당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병들도 아는 건 중요하지요.

‘불법 계엄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사실 그렇습니다—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 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 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이고 저는 적극 동의하고 저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계엄이 생겼을 때 첫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냈던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진상규명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벌은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사실은 몸 전체를 신체검사를 하고 그것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김병주 위원** 그런 측면에서 군은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수사받기에 급급해서 자정 노력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직무대행께서는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군이 잘못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윤석열과 김용현이 군을 활용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 계엄도 비상계엄을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 건 것이 또 가장 큰 잘못이에요.

군이 잘못한 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작전권이 평시에 있고 전시에는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시 대비해서는 테프콘3, 테프콘2, 테프콘1이라고 실제 명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님은 적이 도발을 했다든가 무장공비가 나타났을 때 경계태세 3급·2급·1급 이렇게 해서 실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장관대리,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계태세 2급을 견겁니다, 그러한 조건이 안 됐는데도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경계태세 2급은 안 걸었을 겁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걸었어요, 적에 대한 것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22시 28분에 걸렸다면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군이 탄약뿐만 아니라 아마 일부 부대는 수류탄까지도 다 불출이 됐을 거예요, 경계태세가 걸리면.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12월 4일 날 오전 11시에 해제를 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 경계태세 2급은 비상계엄을 돋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은, 합참의장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전군이 비상계엄에 동원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을 한 아주 나쁜 선례예요. 우리 군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장관직무대리는 이것을 자체 조사를 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직무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비상계엄을 지원하거나 이것을 하기 위한 경계태세 2급 발령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 제 옆에 있는 합참의장께서도 누누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경계태세 발령의 조건들과 관련해서 왜 그런 것들이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발령을 했느냐 이런 문제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군의 어떤 군령의 최고에 대한 결심권자인 의장께서 결심한 사안이고 그 상황에서 의장이 느꼈던 그 상황은 존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주 위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결론 내고.

○**위원장 성일종** 이따 안 쓰시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따 해요?

○**위원장 성일종** 예, 이따 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그러면 그냥 할게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지 말고요,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장관님, 지금 장관님 답변은 군 내 스스로 자정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외부의 충격으로 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은 합참의장을 고발한다든가 관련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한다든가 감사원 감사를 한다

듣가 할 수밖에 없게 가는 거예요. 군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했을 때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 답변은 자정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국방위에 와서 첫 번째 질의를 하는데 어떤 질의를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군의 헌법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군대 내에서 5·16이나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에 대한 구체적 사안 교육이라기보다는 아마 관련된 군법 교육 또 관련된 내용 교육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헌법 교육을 합니까, 육사에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육사에서는 관련된 법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인 군법 교육은 양성기관 또 보수교육기관 속에 포함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현재에 출석했던 사령관들의 진술을 보면, 증언을 보면 참 제가 어이가 없어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해당 행위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은 모르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조성현 1경비단장의 얘기입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엄법과 헌법을 출력했는데 읽으면서 이해가 어려워서 세부 확인을 못 했다’.

지금 우리 군형법에는, 군의 명령이라는 것은 이게 항명인지, 그렇지요? 아니면 정당한 명령인지, 정당한 명령이면 항명이 될 것이고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 지휘관이든 장병들이?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무 대행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밑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명령을 판단한다는 개념보다는 상급자한테 부여된 직무와 책무 중에 상급자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명령을 하달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조승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당연히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됐고 그에 따라서 군대가 동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단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을 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절한 단위에서, 예를 들면 사령관, 개별 사단 단위, 분단 단위 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단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장관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승래 위원 장관이?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군 조직 내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명령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 그러면 장관이 판단해서 소위 명령을 하달을 한 것 아닙니까, 일선 사령관들한테? 그러면 지금 나머지 사령관들은 다 항명의 죄를 범한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이 항명인지 적법한 명령이었는지 불법한 명령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지금 군형법은 잘 아시겠지만 군형법의 제일 가장 큰 첫 번째 처벌조항은 뭐가 나옵니까? 내란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내란죄 그다음에 이적의 죄, 죽 나간 다음에 마지막 한 8장쯤 나오는 게 항명의 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앞에 한 여섯 가지의, 내란부터 이적죄에 이르기까지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죄목에 대해서 지휘관이든 그 지휘를 받는 장병이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러니까 그 장병을 다 일괄적으로 끓으면 저기 병사부터 장군까지가 모두 장병인데 그런 것을 다 판단하는 위치에 놓는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승래 위원 동의하지 않고. 그러면 군의 명령은 일단 명령을 이행을 하고 그 이후에 판단을 받으면 된다 이런 취지이신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복종의 의무라는 것이 사실 크기 때문에 상급자가 정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저는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저는 선결조건이 안 됐을 경우를 여쭤보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린 상급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도 장관도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법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부인을 하고 있고. 사실은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차관의, 직무대행의 취지에 따르면 사실은 일선 사령관이든 장병들은 그냥 명령을 이행한 정도의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처벌하더라도 가볍게 하거나 면책을 주거나 폭넓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대통령과 장관이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명령을 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나머지는 다 그냥 봐주자’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국민과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황희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지시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사령관이 혼자서 유리창 부수고 들어갔고 체포조 편성해서 선관위 보내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코미디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사실 여부를 아마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지금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무책임한 또 구질구질한 구질구질함이 대한민국 국군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과 또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텐데 그 이후에는 군이 정말로 교훈으로 삼아서 해야 될 것으로 정리해서 제가 보기에는 육사도 그렇고 각 군 사관학교라든지 장병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헌법 교육도 필요하

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형법에 내란죄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군은 국민과 국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했으니 당연히 내란죄를 군형법의 첫 번째로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무대행께서는 그리고 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각 군 지휘관들이 계실 텐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것인가, 혹은 각종 사령부의 법률 참모의 기능 같은 것도 어떻게 높여 갈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장, 강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말씀 감사드리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 저희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꼭 반드시 포함시켜서 잘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대식**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국방부장관직무대행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직무대행입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지난 12월 말부터 국조특위를 시작해서 기관보고 두 차례, 청문회 세 차례를 하면서 많이 논의됐던 내용이 현재 이곳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 국조특위에 참석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유사한 질문들이 오고 대행님께 자꾸 질의를 하는데 정리하자면 제가 국조특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각 군의 보병부대들 같은 경우에 5분 대기조가 있듯이 당시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일부 사령관들을 제외하고 공수여단장 이하 많은 사람들은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특전사는 신속대응부대가 출동해서 신속 대응부대가 가지고 가야 되는 개인화기로부터 탄약, 장구 등을 가져갔고 수방사도 개인화기 등을 가져갔습니다. 특전사는 출동해 보니까 국회다 보니까 탄약을 다 모아서 개인한테 불출하지 않고 한 곳에 비치해 뒀고요. 수방사는 사령관이 현장에 위치하면서 이상황이 개인화기의 탄약을 사용할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개인화기를 모두 차량에 둔 상태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탄약의 불출에 대해서는, 불출도 아니고 이미 경기태세 2급 발령에 따라서 합참의장 지시에 의해서 비상계엄과 상관없이 각 부대별로 이것을 외부의 탄약 차량에 적재해 놓은 상태다. 이것 아마 군대 생활을 했거나 군인들은 다 이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조특위와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돼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국조특위가 아니고 국방위 현안질의라고 해서 저는 전혀 이거와 관계없는 국방위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대행님 계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현 시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최근 국내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비상계엄 때문에 많이 실추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지 않은 군기 관련한 사고가 많아서, 지난 12월 24일 날 육군 모 부대 병사가 휴가 중에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고요. 도박에 빠진 부사관이 병사 휴대전화를 사용해 대출받고 간부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규모가 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대에서 현재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육군에서 2월 4일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군이 본연의 업무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잘 수행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국민에게 엄청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사항은 잘 조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묻지 않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적확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인사참모부장이든지 관련자들은 저희 의원실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고창준**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공군참모총장님 나오셨지 않습니까? 나와 주십시오.

오늘 회의 중에 청원이 있습니다. 1월 9일 부로 5만 명의 국민들이 청원을 올린 내용이 있는데 그것 관련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19일 날 충주 공군 모 부대에서 차량 사고가 있어서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 특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못 했지만 그래도 나름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여섯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PPT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노후 차량에 대한 관리 부실입니다. 이 차량은 1과 4분의 1t,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닷지 차량인데 14년 식인데 지금 32만km를 뛰었습니다. 탑승 정원 12명이고 인원 및 소량물자 수송을 위한 차량이지만 KF-21, 첨단전력 F-35 이런 것 운용하는 공군에서 저런 차량을 10년 이상 운용해서 32만km를 주행한 노후 차량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사고난 게 보니까 이게 30km로 달렸는데요. 갑자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제가 볼 땐 축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절벽으로 추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핸들을 돌려서 나무를 부딪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차량 운행일지 작성된 것 내용 한번 보십시오. 작성했는데 지금 동일하게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똑같이 운용했고요. 차량 운행일지의 원칙은 공군 차량 관리, 운행한 운전병이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름은 다 틀린데 똑같은 필체로 똑같은 펜으로 작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분명히 차량 운행일지 위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세 번째, 차량이 정비됐다고 돼 있는 날짜가 10월 10일 날인데 차량이 정비돼서 엔진 까지 교환했는데 당일 날 159km를 운행했습니다. 차량 엔진 교환을 하는데, 엔진 내리고 다시 정비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159km를 운행하지요? 그다음에 32만km를 타고 10년 이상 되고 병사들을 12명씩 태우고 그런 차량이 어떻게 이렇게 운용되는 겁니까?

다음 번째는 선탑자 지정 및 안전교육 부실입니다. 차량이 운행될 경우에는 선탑자 지정하고 선탑자의 안전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사고 당일 해당 차량의 선탑자는 간부가 아닌 병사고요 운행 전에 사고 예방교육도 생략됐습니다.

네 번째, 정원 초과 탑승입니다. K-311 차량은 탑승 정원 12명이라고 맨 처음에 사고 차량 제원 얘기했는데 당일 날 1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안전벨트 착용 부실입니다. 사고 차량에는 안전벨트 10개 설치돼 있는데 당일 날 15명이 탑승했습니다. 5명은 당연히 안전벨트 부족했고요. 운행 전 점검이 안 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차량에 호루가 돼 있는데 당시 뚜껑 없는 차량에 병력이 탑승했던 K-311 차량은 병력 수송과 화물 운용인데 당시에 천으로 된 호루를 씌우거나 벗기고 운행을 했습니다. 이는 전술적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당일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뚜껑이 없는 차량에 병력을 탑승시키는 것은 안전에 취약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원인은 수사를 통해서 규명되겠지만 이리다 보니까 사고를 낸 운전병이 인명사고가 나다 보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 운전병 한 명의 비호나 아니면 그 사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아들들을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한테…… 10년 넘어서 32만km나 된 차량을 태우는 이것이 정말 적절한지, 총장님 이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행님, 이건 전 군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강선영 위원 총장님, 답변 주십시오.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강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고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부터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명을 말씀 주셨는데 모든 차량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수명연한이 있습니다. 일단 15년이라는 수명연한이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월·분기·반기 점검은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운행일지 작성이라든지 탑승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12인승이기 때문에…… 15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조수석에 1명이 더 탑승을 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었고 뒤에 탑승하는 곳에는 12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10명이 안전벨트를 할 수 있는데 2명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주시면서 뚜껑이 없는 K-311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다 뚜껑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모든 운행일지 감독은 나갈 때 간부가 직접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병사가 건물을 나갔다가 바로 식사를 하러 가면서 식당으로 가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라 거기의 지휘 감독이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이 모든 내용들은 경찰이 현장에 왔었고 안전요원들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실제

적으로 운전병사가 입건이 된 상태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고가 난 K-311 차량은 전체 병력 수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각 부대별로 중형 버스와 소형 버스를 이용해서 병사들을 후송하고 있습니다.

전 군에는 육군까지 다 포함해서 3000여 대의 차량들이 같이 있습니다, 1.4t이. 전체 다 개념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잘 조치해 주십시오.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예.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대식** 강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아까 성일종 위원장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하라고 했는데 이전에 한 30초 시간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강대식** 그래요. 하세요.

○**박선원 위원** 존경하는 장관직무대행님, 합참의장님 그리고 각 군 총장님들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도 아들 둘이 다 육군에 갔을 때 초기에 한 7주 8주 매주 토요일마다 가 가지고 10시부터 3시까지 같이 대화도 하고 또 핸드폰 빌려줘 가지고, 그때는 핸드폰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보고 노트북 컴퓨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줬는데 나이가 22세 24세 이래서 다 큰 것 같지만 정말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 가정의 중요한 아이 같은—적어도 그 집안에서는—사람들을 맡아서 우리 군에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도 있고 한데 이런 시기에 장병들 더욱더 잘 다독거리면서 정예 강군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합참의장님, 지금 한미연합사 협력체계 전혀 문제없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박선원 위원**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도 새로 됐고 해서 이분들이 바로 방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사이에 합참의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시기도 쉽지 않지요, 지금 한국을 비울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태사령관의 방한이라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공개적인 통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미동맹 연합대비태세가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때때로 과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직무대행께 질문드릴게요.

24년 6월 중순에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형 꽈종근 이진우 그리고 당시 합참 차장 강호필 차장, 현 지작사령관입니다. 대통령과 만찬을 했고 김용현은 이 자리에

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데타를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김용현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극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장성들은 다 국군 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위치이고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맞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4명, 특수부대 사령관 3명과 합참 차장, 현 지작사령관만 대통령에게 이들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9일 날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세 사령관이 다시 만찬 회동을 했는데 그 직전에 여인형이 김용현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스트레스의 공통된 의견,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지작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입니다. 이런 것을 장관직무대행과 합참의장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처음 봅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직무대행님, 지금 여러 장성과 영관 장교들이 수사를 받고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마는 지작사령관 같은 부분은 별도로, 성기욱 감사관 계시잖아요. 감사관을 통해서든 감찰을 별도로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합참의장께서도 전시에, 물론 평시에도 휴전선 전체의 방어를 맡고 있는 지작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직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우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러한 일이, 지작사령관이 계속 의심받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산뜻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체 감사나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대행님, 정보사 수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체 조사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현재 정보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전 900여단장이 와서 말을 했다시피 정보사는 계엄 시에 후방의 어떤 특정 지역을 맡아서 관구사령부를 운영하는 그런 사령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래서 정보사에 대해서는, 지금 방첩사 자체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내란과 관련한 수사권, 군내 수사권은 방첩사에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선원 위원** 그래서 적어도 대령급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직무대행께서 조사를 시키셔야 됩니다. 장관대행께서 국방조사본부도 사실상 조사 업무, 수사 업무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중단시켰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적어도 자체 조사는 계속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시간 끊어 주시고, 홍창식 법무관리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법무관리관입니다.

○**박선원 위원** 법무관리관님, 장관 공관에 간혹 가 보십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간 적이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언제 가셨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국회에 있을 때 아침 일찍 보고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시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박선원 위원**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계실 때 서로 아시는 사이지요, 김용현 장관하고?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오늘 현재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당시 행안부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갔는데 여러 종류의 문건이 놓였고 그중의 하나를 보니까 소방청장 앞으로 주는 문건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단전 단수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김용현 장관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데 홍 법무관님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조창래 정책실장이 도와줬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없습니까?

조창래 정책실장은 12월 3일 미국 출장 중이셨거든요. 홍 법무관님은 본부에 계셨지요, 국방부에?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이 문건을 누구하고 같이 작성했을까요? 법무관도 아니시고 정책실장도 아니시면?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적어도 홍창식 법무관님은 아니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확실하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국정조사특위나 이런 데 증인으로 채택은 안 되셨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박선원 위원** 합참의장님.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합참의장입니다.

○**박선원 위원** 이제 다른 주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미연합사와의 협력 관리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한반도 주한미군에 관한 정책이 보통 5월 달에 나오는데 훨씬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장님, 주한미군 규모 조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 없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없고……

○**박선원 위원** 선제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시고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에 관

한 말이 안 나오도록 의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미 측과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잘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대식**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합참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합참의장입니다.

○**박찬대 위원** 지난달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하면서 이번 내란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사전 모의를 했다고 보이는 정횡들이 있습니다. 특전사 등은 계엄 실행 수개월 전부터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파악을 위해서 설계도면 확보 등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2024년 3월에서 12월까지 특전사 7공수는 군산 정읍 전주 등 호남지역 교도소와 KBS 한국은행 등 국가중요시설을 열일곱 차례 방문하고 내부 구조를 촬영하고 설계도, 재난대비 안내도 수집 시도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작년 3월부터 군 관계자들을 앓혀 놓고 비상대권으로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전사령부 예하 7공수가 교도소 방송국 등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건물의 설계도, 비상대피계획, 시설물 사진을 요구하며 반복 점검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테러 대비였지만 계엄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이 시행되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반국가세력으로 규정된 인사들을 대량 구금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님, 특전사가 민간 교도소 설계도를 요구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군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설정돼 있는 부분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22년의 대테러방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핵심 주요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정보를 관리·유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테러 발생 대비해서 출동해서 대응하기 위한 대비 차원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특전사 부대의 내부 사진촬영 허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10년 사이에 관련 내용이 없고요. 24년 5월 달에 전주교도소 군산교도소 정읍교도소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있다면 왜 교정본부가 설계도 제공을 거부한 것인지……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전에는 아마 22년에 되고 22년에 검열을 받으면서 대테러정보철을 관리·유지할 필요가 있다, 테러를 대비해서 핵심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지적을 받고 그 관련된 부대들이, 아마 그 정보철을 최신 업데이트해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업데이트해 가지고 관리·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관리해 오는 것이 최초의 대테러방지법의 그 법에 의해서 22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 23년, 24년, 25년 가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업데이트돼 가지고 정보철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보관하는 그 철의 종류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런데 특전사는 향후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합참의장의 말씀대로라면 이러한 대테러 관련 업무가 과거에도 있었고 향후에도 발생할 여지가 있을 텐데, 특히 교도소 점검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면 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특전사는 향후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 없다, 왜 지속하지 않겠다고 한 것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시설로 되어 가지고 테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방지법에 의해서 최신화시키도록 돼 있는데 왜 25년에 안 하겠다고 그랬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테러가 발생할 지역……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가능성이 높고 핵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설정해서 가지고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용어로는 핵심노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초기 대응이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신화돼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특전사의 일상적인 임무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데 7공수의 교도소 현장 투입 및 설계도면 요구는 앞으로 안 발생할 것이다, 전무후무한 임무다라는 것이 예견되고 있는데요. 지금 특전사가 민간교도소 설계도를 왜 요구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특전사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라서 교도소 정보를 최신화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합참이 교도소 설계도와 비상계획 소집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비상계획을 지시한 게 아니라 22년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대테러정보철 작성을 저희들 합참 전비태세설에서 검열을 나갔습니다. 검열을 나가서 그 특전사의 정보철 유지 상태가, 미흡 평가를 22년도에 냈습니다. 그 이후로 업데이트가 된 결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합참에서 지적한, 검열 결과에 지적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무엇을 지적했고 뭐 때문에 검열을 하는지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 아니 열람이라도 좀 하자라고 하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 검열했던 내용이 비밀이 아니라면, 제가 그것 비밀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안 했는데 비밀이 아니라면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거로 평가를 합니다.

○**박찬대 위원**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엄의 조직적 사전모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일을 누가 지시하고 실행했는지 경위와 목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내란죄 기소는 계엄 실행 직후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데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조직적 내란모의 단계는 현재 조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국정조사특위에서 군을 대표해 사죄한다면서 책임을 인정했지만 지금 정작 진상규명은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않고 계셔서 아마 국민적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 공감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합참이 특전사에서 내린 전비 태세점별 지시문과 교도소 점검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시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책임자를 살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협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22년부터 폴로업(follow-up)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잘 살펴보시고 분명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강대식** 박찬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대행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장관대행입니다.

○**윤상현 위원**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정확한 금액은, 1조가 좀 넘는 규모입니다.

○**윤상현 위원**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내년도는 협상을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올해 것이 26년……

○**윤상현 위원** 아니, 26년은 이미 협상이 완료돼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26년 때……

○**윤상현 위원** 1조 5000억부터 시작되고 올해는 한 1조 40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유세 중에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적어도 100억 달러 내야 된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들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당연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12차 SMA 협정이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윤상현 위원** 물가 연동해서 올린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내년도는 올해보다 한 8.5% 올라가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 이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들어올 거

예상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해서 저희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에 저희가 26년도 방위비 12차 협상을 때 한미 간에 나누었던 공동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조로 이것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물적인 방위비 분담금 외에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미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2019년도 트럼프 1기 때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임스 드하트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당국에다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너희는 왜 안 내냐, 계속 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질질 끌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같은 것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해서 우리가 내주자, 줄 건 내주고 우리가 요구할 거, 예를 들어서 한미 간의 원자력협정을 뭐 일본 수준으로 한다든지, 호주하고 미국같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는다든지 아니면 한미 간에 핵 공유협정을 맺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협상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겁니다.

○**윤상현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식 날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지요. FOX News 가서도 했고요. 또 이시바 시게루하고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뭐 어쩌고 그것은 본인의 입이 아니라 공동성명문에 나왔는데, 또 피트 헤그세스 미국의 국방장관도 상원 인사청문회 서류 보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민주당, 공화당 정강정책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북한을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트럼프 4년 안에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100% 사실상 핵 보유 인정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계기, 모멘텀은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려야 올 수밖에 없다, 군사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 같은 거 생각 못 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라는 사실적인 상황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윤상현 위원** 아직까지 않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미국을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18호를 통해서 마이애미 이상으로, 1만 5000km 사거리를 가진 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뉴욕이든 LA든 마이애미든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텐데 그 시간이 트럼프 4년 안으로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고도화되면서, 한번 보십시오. ICBM의 어떤 대기권 재진입 기술 분명히 전이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좋다, 너희가 ICBM 실전 배치하지 마라, 앞으로 핵 동결하고 핵 확산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될 거다. 그러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북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한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거다.

이것에 대해서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옵션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옵션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은 현재까지 바뀐 출범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다거나 바꾼다거나 그 어떤 메시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대비로 예를 들어서 한반도 영해 바깥에 전략핵잠수함을 갖다 놓고 거기에도 미국의 핵미사일 탑재해서 한미 간에 핵 공유 협정을 맺는다든지 제한적 핵무장을 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생각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고요.

지난달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거대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중국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마 그것을, 수 개를 더 연결해서 그것을 무인기지 해서 영토화하거나 이런 주장을 해 나갈 것에 대한 우려들을 저희들이……

○**윤상현 위원** 철거를 요청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부도 거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고 실제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관련된 기관들과 협조해서……

○**윤상현 위원** 해경이나 해군 순찰을 강화시키고 있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말로 안 들으면 구조물을 무력으로 철거를 해 버리십시오. 중국이 반드시 어떤 주한미군의 전략적 기동성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방어 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포석을 두는 겁니다.

남사군도에서 어떻게 해 왔습니까? 중국의 이 영토 팽창 야욕을 초기에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군이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교부를 통해서 강력한 항의도 하고 해경 순찰 또 해군 순찰 강화시키고, 영 말이 안 되면 구조물을 파괴시켜라, 무력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하여튼 전략적으로 국가의 이익, 전략적 이익에 우선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대식**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2025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백선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보고 내용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25년도 연두 업무보고 외에 별도의 꼭지로 보고는 드렸고 여기 안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강대식 간사, 성일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선희 위원** 그러면 별도 꼭지로 보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일단은 두 가지 패턴입니다. 지금 현재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했던 군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이 투트랙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과업들을 뽑아 가면서 조치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오늘도 업무보고 자료가 있었고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말씀하신 군 안정화와 신뢰 회복 추진에 대해서 유심히 봤는데 내용이 정말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군 주요 장성에게 보직 해임, 4명에 대해서 보직 해임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출동 장병 대상에게 심리적 안정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밖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적 안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국방부에 요청해서 시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군이 어떻게 신뢰 회복을 해야 될지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시간까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서는 이 12·3 불법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지요? 국방부 내부에서 내부 토론은 있으셨는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것은 최초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상황에서 비상계엄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관련된 세부 것은 아마 수사가 진행되니까 거기에서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백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적 사항이고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헌법을 다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는 제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5조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4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82조에는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 사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무대행께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일은 다시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다시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김용현과 같은 국방부장관이 임명된다면 다시 군이 개입된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다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송구하지만 사실 그런 가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백선희 위원** 저도 그런 가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가정하고 싶지 않으나, 그러나 저는 불행히도 그 가능성성이 만에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군의 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대한민국 군이 존재하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한 서술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의 조직, 군의 인사, 군의 문화 그리고 군인 육성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미흡한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좀 개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그리고 부대관리훈령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국군은 국민의 군대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헌법정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부대관리훈령에는 지휘관을 핵심으로 생사를 같이 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주적 가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기본법과 훈령 그리고 헌법에도 사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치에 따라서 군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 이외에 조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방부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방부 조직이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엄에 참여한 부대를 살펴보면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 특전사 등이 동원됐습니다. 이것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지금 조직상으로 보면 국직부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직부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방부장관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게 됩니다. 이번과 같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한통속이라고 한다면 국직부대를 동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계엄 사태에서 이들 부대들이 동원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직부대 관련해서요, 윤석열 정부하고 이전의 문재인 정부하고 이 국직부대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가 비교를 해 왔습니다. 지금 국직부대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부대가 2개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장성 수도 33명에서 40명으로 7명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지요. 방첩사의 기능을 더 확대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과정에서 대테러·통합방위 지원으로 개정하려 했으나 민간인 사찰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행히도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국직부대의 조직·인원 그리고 임무를 확대해 왔고 그렇다고 하면 이 확대와 더불어서 이를 견제할 수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견제할 수단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조직·인원·임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통제 장치, 견제할 수단이 있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새롭게 편성된 조직들 또 조직이 조금 증원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임무·기능·역할을 그때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을 서로 견제하는 기능 이런 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선희 위원** 그다음에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의 자료를 보면, 지금 국직부대 인사의 현황입니다.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국방부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위원장 성일종** 백선희 위원님, 이게 좀 결리시지요? 추가질의드릴게요.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가질의를 안 하시고 그냥 다 연이어서 끝내시겠습니까?

○**백선희 위원** 아니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추가질의하시지요.

○**백선희 위원** 예.

---

○**위원장 성일종**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의장님,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과 관련돼서 작전적인 측면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의장님께서 2월 6일 날 국조 청문회에서 계엄 당시 지휘권의 이양과 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수방사·특전사가 계엄사 통제하에 진행되는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부대에 대한 통제권이 애매한 상태가 돼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환원받을 때 말씀이십니까?

○**부승찬 위원** 예, 이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고 또한 ‘법령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부승찬 위원**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국가 비상사태에서 지휘권의 어떤 이양과 환원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법령으로도 규정되지 않는다면 지휘권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의장께서는 12월 3일 계엄 당일 날 22시 40분에 전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 판단에 대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논외로 하고요. 어찌 됐든 일단 발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은 이에 대한 상응하는 작전적 조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맞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각 군 본부에다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전군 경계태세 관련 단편명령 수신 시간을 요청을 했고 확인한 결과 문서 수신은 주로 팩스로 이루어졌고 수신 시간은 23시 35분, 정확히는 한 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군이 예하부대에 전파한 시간은 12월 4일 03시 그래서 5시간 정도 있다가였고 해군은 01시 50분입니다.

다른 명령도 아니고 전군 경계태세 2급 명령이라는 말이지요. 물론 구두로 하고 전화로 하고 했다지만 또한 우리 군에는 자동동보통신 등 다른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강구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사실 구두지시가 돼 가지고 나가는 그 유선망이나 C4 I로 나가고 또 정확하게 다시 나가기 위해서 팩스로 나가는, 아마 지금 팩스로 나간 사항들을 보고를 받은 상황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정보사의 상황일지를 보더라도 대응반을 소집했고 23시 52분에는 피아식별띠 불출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양구군청 같은 경우에 군부대의 출입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합참은 정말 오랜만에 이런 것들을, 경계태세 2급이 몇 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2급 발령에 따라서 전군이 적절히 상황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 조치되는 사항들은 예규에 따라서 조치 목록에 따라 조치가 되고 그 조치되는 것들은 저희들 합참에 보고도 되고 종합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게 일률적이지는 않겠지만 전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작전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비태세검열실로 하여금 검열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작전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인데 고려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작전적 조치는 저희들이 1차 지휘관인 작전사령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비태세실에 넣어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한다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게 보면 모든 부대들이 동일한 자동조치부호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정보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라는 것은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든지 그다음에 북한 공비가 침투한다든지 북한 상황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의장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리고 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합참의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조 특위에서도 말씀하셨고, 지휘권 이양과 환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두가 됐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부승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 지휘권 이양과 환원에 대해서는 합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도 법령적으로도 이게 제도화가 안 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엄군 지정은 없었다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합참이 작전 통제하는 지휘권을 갖고 있는 일부 부대가 움직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령으로 제도화를 시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 결심을 하거나 군 지휘관들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데도 상당히 수월하고요. 계엄과 같은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몇 차례 언급하고 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엄 상황에 저희 지휘 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방사청장님, 사실관계 잠깐 확인할게요.

명태균 씨가 방산 사업에도 개입했다라는 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아닙니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부승찬 위원**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2년 11월 당시 김영선 의원실 보좌관이 명태균 씨에게 한화디펜스에서 요청한 사업들의 예산 심사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는 내용이 SNS 자료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게 창원지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명태균 씨가 방사청에서 작성한 자료나 방사청에서 받은 예산 심의 결과를 보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부승찬 위원**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쉬었다 안 합니까? 저분들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는데.

○**안규백 위원** 그냥 하고 끌냅시다.

○**한기호 위원** 10분만.

○**위원장 성일종** 한 바퀴 돌고, 화장실은 그냥 다녀오시고요.

○**허영 위원** 5분이 아니라 3분이요?

○위원장 성일종 예, 3분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좀 더 하실 분은……

○김병주 위원 추가질의도 있나요?

○위원장 성일종 제가 또 더 하실 분들은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대행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5분 대기나 신속대응 부대 등 비상대기 부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운영 기준은, 운영 규정을 다 두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임종득 위원 거기에는 휴대장비, 무기·탄약 휴대 규정들이 다 나와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 규정은 어떠한 상황에도 바뀌지 않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임종득 위원 제가 근무할 때도 그랬는데 심지어 산불 진화를 하러 가더라도 비상대기 부대는 그것을 다 가지고 가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 출동하는 부대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게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와 같은 내용을 국조 특위에서 제가 질문도 많이 했고 또 장관님이나 의장님이 여러 번 답변을 했는데도 똑같은 질문을 지금 계속 야당에서는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법으로 파병된 북한의 사상자 수가 최소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언론에 그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정도 되면 재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아마 재편성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서 일부 언론에 의하면 철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쿠르스크 현지에서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또 8000명 정도가 전투 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희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 전선에서 이탈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또다시 전선에서 식별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합참의장님.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합참의장입니다.

○**임종득 위원** 북한은 예전과는 달리 올해 들어와 가지고 현재까지 딱 두 번밖에 도발을 안 했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간 도발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정말 많이 했는데 작년 12월에 1건도 없었고 올 1월에 2건, 2월에도 지금 없습니다. 올해 도발한 2건도 극초음속미사일하고 전략순항유도미사일, 이것은 개발 중에 있는 무기 체계이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현재는 관망하고 있고 회색지대 도발, GPS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유리할 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북한에 파병 대가로 해 가지고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성 기술 이런 것들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된 상황들이 식별되는 게 좀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전체적으로 지금 한미가 공조해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대행님, 작년 10월 달에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종료가 됐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국무회의 의결이 됐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안규백 위원** 첫해에는 8.3% 인상이 됐고 또 단년도 증액이 아닌 5년도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를 했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첫해 빼 놓고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올린다고 했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왜 설령설령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세요? 다시 재협상을 할 수 있다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조금 전에 내가 여기 앞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질문도 뒤로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재협상에 대한 미 측에서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정해서 답변드리지 않는다고……

○**안규백 위원** 요구가 없더라도 나라와 나라가 협상을 했고 우리 협상팀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잘했잖아요. 이미 6개월에 걸쳐서 대마라톤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협상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략무기가 한반도에만 전개됩니까, 아태 지역 다 걸쳐서 오는 건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시겠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저희가 작년 말에 했던 방위비분담금 협상 그 기조를 가지고 미 측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것은 아주 클린하게 끝난 겁니다. 클린하게 끝난 거예요. 이미 미집행금도 1조 8000억인가 그 이상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자세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전략무기 전개 비용 같은 것은 이것은 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명심하시겠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조창래 정책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국방부 작년 주요정책과제 성과로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군의 역할과 사명을 다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일응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 12·3 내란 사태가 있었는데 물론 일부 정치군인이 충직한 우리 군을 정치 도구화한 것은 다 맞지만 어떻게 이런 문건을 쓸 수가 있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어디 내용을 말씀하시는……

○**안규백 위원** 정책 평가서에 말이지요, 국방부 작년 주요정책 성과로 그것을 기재를 했더라고요,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실장님이 주관해서 한 것 아니에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군의 역할과 사명을 다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누가 보고 이것을, 저 한글 보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장관대행도 이것 검토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검토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면 실장님이 억지로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아닙니다. 올해 2025년 업무 추진 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규백 위원** 아니, 작년 성과……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어디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안규백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평가를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다 끝나 버렸네. 시간이 말이야 참, 말씀해 주시지.

한번 봐 보세요, 실장님.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게 좀 낯부끄럽지 않아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했어요? 아니잖아요.

들어가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미 뒤에서 쓰고 계십니다.

○안규백 위원 그래요?

○위원장 성일종 예.

○안규백 위원 해군·공군 총장님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3 사태 당시에 경계태세 2급에 따라서 작전은 다 전군이 동일하게 실시했을 것이고 계엄사에서 수사단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까?

먼저 해군부터 하십시오. 차출 요청을……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예, 있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몇 명 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10명을 얘기했고……

○안규백 위원 몇 시에 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제가 알기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규백 위원 총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이 무슨 말씀이에요?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01시 30분경에 전화로 연락이 와서……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계엄 해제되고 난 다음에 01시 30분. 오케이, 알았습니다.

공군총장님.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동일한 방식으로 전화가 와서 10명에 대해서 이메일로 보낸 내용은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 시간도 01시 30분입니까?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예, 동일합니다.

○안규백 위원 그래서 올려 보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예, 조사본부의 실장이 우리 상황실장에게 10명의 인원을 통보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간부하고 군무원하고 10명을 2시에 올려 보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 인원들을 왜 보내냐 이런 이야기도 안 물어보고 그냥 무조건 올려보낸 겁니까?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예, 10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10명의 명단만 보고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2시 정도에 10명을 인원만 통보한 게 사실입니다.

○안규백 위원 의장님한테도 해야 되는데 시간상 못 하겠네요. 이심전심으로 합시다.

---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잠깐 정정드리겠습니다.

해군에 연락이 온 것은 23시 13분경에 연락이 왔고,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00시 23분, 00시 33분에 최종적으로 명단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새벽 1시 30분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를 들었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명단 제출한 것은 00시 33분, 최초 연락받은 것은 23시 13분경에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도 해군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간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직무대행님, 지금 박정훈 대령이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보직도 없이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서 고립된 채로 밥도 혼자 먹고 군인들과의 접촉도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군인들이 볼 때 ‘상관의 부당한 명령도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해 버리면 항명죄로 기소되겠구나, 불이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군심을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심 안정은커녕……

12·3 불법 계엄 당시 한번 보십시오. 출동한 군인들,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그날이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누구라도 공포탄을 한 발이라도 쏘았더라면 그 순간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작별했을 것입니다. 군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 예가 과종근 사령관의 경우에 ‘테이저건을 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법무참모가 막아서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말라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이진우 사령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총이라도 쏴라’라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동석해 있던 부관 장교가 동시에 듣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실행에 옮기지 않음으로써 더 나아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러면 누가 그 순간에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지요 한번 보십시오. 67년도, 오래된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게 아마 현재까지도 유지될 겁니다. 군법피적용자, 군인이라면 누구나 다 군법이 적용되는 거지요, 장관뿐만 아니라 다. 명령의 불법성 판단은 명백하게 불법인 것을 제외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명령이면 수명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12·3 사태를 보면 과종근 사령관은 그 명령이 애매하고 뭘 하라라든가 하지 말라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즉자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리창을 깨고 더 나아가서 국회에 진입하고 국회가 아무런 테러 행위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불법으로 판단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불행을 막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경우에도 아까 ‘이게 항명죄이기 때문에 주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복직한 현황이 있는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1심 선고 이후에 복직이 됐는데 그 죄명이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공갈,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최근의 23년과 24년 4건의 경우에 이런 죄명이었습니다. 이것과 박정훈 대령의 사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박정훈 대령은 억울하게 죽은 어린 사병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직무에 따른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1심 판단을 제대로 받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신속하게 바로 정

리해 주시는 것이 직무대행님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불행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사전 공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인들이 사전 공모가 있었다면 이렇게 영성하게, 이렇게 혀점이 많게, 이렇게 부실하게 했겠는가? 사전 공모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작전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대한 연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고 우발계획을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전 공모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들이 아무도 여기에 동원돼서 사전 공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국가 통합방위와 관련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는데 합참 보고서에도 2쪽에 국가 통합방위요소 간 협업 및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써 놨어요. 3쪽에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하에 테러 관련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의장님?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비태세를 위해서 2015년에 10건을 포함해서 2024년도까지 112건을 협조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교도소도 포함되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렇게 교도소까지 다 포함해서 국가중요시설이 테러를 당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특전사가 준비한 건데,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맞습니다.

○한기호 위원 맞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한기호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계엄과 연관돼서 얘기하는 자체가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상 경계태세 2급 발령과 관련해서 이것도 계엄과 연관해서 안 했지만 저는 합참의장님이 4성 장군으로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입니다. 1위인 의장님께서 상황 판단을 해서 이 상황에서 비상 경계태세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발령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떠한 명령을 내릴 때 예방 차원의 명령이 있고 조치하기 위한 명령이 있어요. 이것은 조치하기 위한 명령보다는 예방 차원의 명령으로 저는 성격을 봅니다.

그리고 경계태세 2급 발령이 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후속을, 조치 부호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그 조치 부호대로 약전부대든지 행정부대가 부호의 순서대로 하나씩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조치한 행위 중에 탄약에 대한 불출 행위가 있습니다. 탄약에 대한 불출 행위도 부대마다 다른 거예요. 행정부대가 다르고 전투부대 중에서도 접촉 부대가 다르고 또 즉각 대응 부대……

1분만 더 주세요, 더 질의 안 할 테니까.

즉각 대응 부대가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탄약을 누가 불출하라고 명령했느냐 하는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면 탄약에 대한 불출은 탄약고를 가지고 있는 통상 대대입니다. 대대장이 조치부호에 의해서 불출하지요.

그러면 불출하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탄약고에서 꺼내서 차량에다 실어서 그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출동 대기 목적으로. 두 번째는 병력이 출동하면 후속을 해서 차에 탑재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중에 긴급한 탄약은 본인에게 휴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휴대시킨 것은 공포탄만 휴대를 시킨 거지요.

아예 수방사 같은 경우는 총도 안 가져가고 탄약은 두 번째고 이렇게 했는데 탄약을 몇십만 발 가져갔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국정조사특위에서도 가져가지 않은 게 확인이 됐어요.

탄약 불출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경계태세 설정에 따라서 부대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조치에 따라서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무기고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이미 그것을 전제하고 나온 것이지.

○한기호 위원 그만하세요,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 20만 발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다고 하면 되나요?

○한기호 위원 안 가져갔다니까요. 주둔지에 놔뒀다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니까.

○안규백 위원 아니, 이 건물 벽에 쌓아 놨어.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갑니다.

○허영 위원 아니, 말씀 나누시고 있어 가지고.

○위원장 성일종 빨리 질의하십시오.

○허영 위원 대행님, 작년 11월 25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아미산에서 육군 3군단 예하 소속 김도현 상병이 훈련 도중 실족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우선 고 김도현 상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빌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고자 발견 시, 그다음에 그 사고에 대해서 홍천소방서에 신고를 한 게 27분이 경과된 후에 신고를 했고요.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 신고는 57분이 경과한 후에 신고를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게 114분이 경과한 후이고 육군의 메디온 헬기가 로프 하강 후 환자 접촉한 게 179분이 경과한 후입니다. 그래서 총 4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헬기로 이동하고 사고자 사망 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2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면 사고자는 살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고 병사를 민간 병원으로 후송한 것은 군 메디온 헬기가 먼저 발견하고 나서 군 메디온 헬기가 후송한 것이 아니라 소방 헬기가 후송을 했어요. 4시간이 걸렸고요. 거의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응급구조 부사관이 사고자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현장 최고 선임이었던 모 중사가 차량 내에 대기하며 운동화를 착용한 운전병에게 급경사지인 아미산 정상까지 장비를 운반하게 한 점, 심지어 그 중사는 차량 내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포렌식으로……

그 운동화 착용 운전병의 발목 부상으로 사망 병사 혼자 기준 25kg 장비에 더해서 13kg이나 달하는 장비를 추가로 운반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이 모든 게 도저히…… 이런 군 내 사고에 대한 응급시스템이 완전 붕괴되어 있는 사고 현장이었어요. 이것 철저하게 군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님, 군 내에서도 하고 이것은 사망 사고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넘어가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 내부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지적 사항들, 최초 보고 지연 또 의무 헬기와 소방 헬기 간의 협조 문제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상임위 때 국군정보사령부 예하부대 병사 변사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최근에 징계가 이루어졌지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세부적인 징계 현황을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감봉 1개월과 견책이 나왔어요. 경징계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허영 위원** 병사가 징계당한다고 해 가지고 거의 독방이나 다름없는 곳에 홀로 남겨져 있다가 돌연사했어요. 이런 사망 사고에 대한 징계를 견책, 그래 놓고 이것도 불복해 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를 신청했어요. 이렇게 사망 사고에 대해서 안이하게 군이 대처하면 도대체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진상규명도 안 돼요. 그리고 대응이 늦어 가지고 이렇게 사고 당하면 사망을 해요.

저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실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준 장군, 지금 허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다 지시받으셨잖아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고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제가 국방위원님들 대표해서 김 일병의 부친을 얼마 전에 한 2시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군이 그동안 보여 준 사고가 났었을 때 조치할 때까지의 과정 그리고 사망 사고가 난 이후의 장례까지의 과정 모든 것을 봐 보면 정말 되돌아볼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요청했는데 아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고 장군님께서 각별히 챙기셔서 유족에 대해서 그래도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부분은 풀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직책을 소홀히 했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국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너무 태만했어요.

그리고 군단장을 비롯해서 여단장, 세상에 사망 사고가 나서 경찰로 이첩을 한 이후에 장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다 했는데 군단장으로 할 거냐 여단장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를 열고 열흘이 넘게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빨리 잘 모시고 예우 갖춰서 살아 있는 분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지휘관들이 말이에요, 무슨 자세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다 지적을 했는데,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성일종 군단장부터 여단장까지, 특히 여단장 그때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제대를 했어요.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고 나갔을까 하는 게 국민 마음이에요. 그런 부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 장군님이 철저하게 수사하시고요. 차관님께서 군단장을 비롯해서 왜 늦었는지……

여러분, 거기에 무슨 규정 따지고 이럴 게 뭐가 있어요? 무슨 공무원 일하는 데 같아요, 우리 군인들이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인데 다시 한번 되돌아가 가지고 병사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또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셨는데 위로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고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합참의장님하고 장관직무대행님,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때 앉아 있고 좌우측에 두 분이 앉아 있었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두 분은 사실 핵심 목격자라고 볼 수 있어요.

김용현 장관이 주로 전화기를 몇 대 가지고 통화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정확히 대수는 기억이 안 되는데 한 대는 아니고 여러 대를 사용하신 기억이 납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주로 핸드폰을 썼습니까, 아니면 지통실에 있는 전화를 썼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주로 핸드폰을 썼습니다.

○**김병주 위원** 몇 대였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정확히 대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합참의장님은 몇 대로 기억합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저도 2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두 분은 그렇게 말씀하면 거짓말로 보이지요. 그 옆에 있는데 몇 대로 쓰는지 기억을 못 한다고요? 2대였다고 기억이 됩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저는 2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병주 위원** 2대면 2대 다 비화폰이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비화폰은 보면 알잖아요. 일반폰하고 두께가 다르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계속 들고 통화를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아니, 차관님처럼 바로 옆에 있는데 비화폰인지 아닌지 몰라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 2대 다 비화폰이었습니까, 제가 제보받기로는 3대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비화폰인지 아닌지 그 폰의 성격을……

○**김병주 위원** 아마 대통령하고 수십 통을 했을 텐데 대통령하고는 몇 통화 정도 한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알 수가 있지요. 대통령 통화야 옆에서 유심히 들릴 수밖에 없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유심히 들리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그 안의 대통령의 목소리는 안 들려도 ‘충성, 대통령님’ 하고 자세가 틀릴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위원님께서 상상하시는 것이고……

○**김병주 위원** 의장님께서는 몇 통화 정도 한 것 같아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저도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임무에……

○**김병주 위원**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군의 신뢰가 떨어져요. 바로 옆의 목격자인데 대략 몇 통화 정도는 기억을 하지요.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통화하는 모습 제대로 못 봤을 것 아니에요? 그날만 제대로 봤을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계속적으로 들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랬고 저도 제 임무 때문에 왔다 갔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한 몇 통화 정도 한 거 같아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런 것은 수방사령관한테 육성으로 통화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들은 기억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도 들은 기억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핵심 목격자이신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사실이 그렇습니다, 있었지만. 그래서 끝나고도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게 2대인지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랬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그때 기억 중에 인상 깊은 통화는 어떤 거였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인상 깊은 통화라기보다는 계속 통화를 하시고 또……

○**김병주 위원** 걱정스러운 것은요? 총을 쏘고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든가 이런 것은 걱정스러울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냥 계속 통화를 하셨는데 그 소리가 인지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김병주 위원** 제지를 한 분이라도 했습니까, 이것 잘못됐습니다라고? 신원식 의원은 이것 잘못됐다고 3월에 얘기했던 데 의장님은 제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정확하게 상황을 저희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은 제지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진술했지만, 저는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게 팩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잘못입니다.

○**김병주 위원** 의장님은 한마디도 못 한 거네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저도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지하고 한 그거는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은, 제가 그때 계엄해제 의결을 국회에서 하고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진압됐다’ 이렇게 제가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쿠데타다.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예요. 과거 옛날에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95년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의 경우예요,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직무대행께서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런 건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승래 위원**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헌법 또 군형법 가지고 저랑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휘 계선에 있는 직속 상관에 의해서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달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시를 이행 할 의무가 발생하겠지만 민간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요? 노상원 씨가 롯데리아에서 현역

군인들을 불러 모아 놓고 지시를 하달하고 하는 것은 적법한 명령이 아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도 대단히 당혹스러운데 그 부분은 분명히 사법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쿠데타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거에 하나회 같은 군내 사조직을 없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양상을 보면 정상적인 지휘체계에 의한 지시 하달 관계가 아니라 용현파니, 상원파니, 특히 상원파는 군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조직에 의해서 이런 지시와 명령이 이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관직무대행께서는 앞으로 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혹시 군대 내 여전히 사조직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연고나 지역·학벌 이런 것에 의해서 사조직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일단 군 내 사조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사안이 발생했으니까 무턱대고, 제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강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출동했던 장병들 중에서 다친 장병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물리적으로 다친 장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간 심리적인 치료를 요하는 인원이 있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현재에서 ‘비상계엄 당시에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제가 목격한 장면은 시민들이 군인들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까? ‘윤 대통령, 비상계엄 때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했다. 그래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논리겠지요. ‘그러나 실패했다. 그러니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받을 수 없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었고 군통수권자였다는 게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아까 어떤 야당의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설명을, 군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서 약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방부장관이 군을 지휘했다고 했는데 국군조직법상 8조에서 국방부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을 지휘할 수 있고요. 정부조직법 33조에 의해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군을 국방부장관이 지휘한 것은 원래 법상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군 직할부대가 들어났다고 그려는데 국군 직할부대, 아까 말씀하신 수방사와 특전사는 국군 직할부대가 아니고요 합참이 지휘하는 작전부대입니다. 마찬가지로 합참이 지휘하는 부대도 군령권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지휘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직부대가 들어났기 때문에 계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사실과 차이가 나서 정정해 드립니다.

장관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으면서 연말에 해야 되는 다양한 최고위 의사결정, 예를 들어 방추위라든지 합동참모회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서 결정되어야 할 많은 방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획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행체제로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당시 12월에 계획돼 있던 방추위나 합동참모회의는 계획된 게 없었고요. 그 이후에 새해 25년에 들어서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방사청장님 아시겠지만 그중에 일부 자산에 대해서 미국과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무기체계의 획득이라든지 문제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 가는 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 달라, 안 해 달라 그 차원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외교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 원래 금년도에 광복 80주년하고 해군 창설 80주년으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에서 국제관함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 관련해서 연기된 건지 아니면 예산 관련해서 연기된 건지, 연기된 상황은 장관대행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후반기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외국 무관단에서 변경된 관함식 계획을 빨리 결정해서 알려 달라, 알려 주지 않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국방부의 행정력에 차질이 있느냐 이런 질의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 신인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사외교적으로 좀 잘 정리해 주고 설명을 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치사항을 해 주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것 관련된 것을 확인했는데 일단 해군 쪽에서 관련된 국에 상황 설명을 하고 일정 조정을 얘기했는데 혹시 그것이 누락되거나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해당 국에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직무대행님, 합참의장님, 질문 빨리 드리겠습니다.

정책 관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는 핵 능력을 가진 그 정도 선으로, 일반적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취임사에서 한 게 아니고 밤에 있던 야간 파티 행사에서 'He is a nuclear power'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지칭해서 'DPRK is a nuclear state'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장관직무대행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 자가 핵무기를 갖고 자꾸 우리를 위협한다 그런 뜻이지 국제법적으로나 핵확산금지법에 따른 NPT 조약에 기초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선원 위원** 두 번째는 한미 동맹과 우리의 자체 핵무장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까지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국방부는 아니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그것이 기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만약에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정책 부분이기 때문에 장관직무대행은 아셔야지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는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건 한미 양국이 추진할 정책적 목표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또 살펴보고 따져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나 북한하고 미국이 핵 협상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선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의 대비 계획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중의 하나가 확장억제력의 지속적인 강화, 그 깊이와 넓이를 계속해서 심화시키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맞습니다.

○**박선원 위원** 두 번째는 주한미군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규모가 감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것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일부 북한의 핵 활동이 중단된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확대돼야 되는 것이지요? 즉 NPT 3조와 4조, 핵 비보유 국가도 핵에 대한 평화적 이용은 보장되고 핵 보유국은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선원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나 NPT 조항의 제10조, 그러니까 최고의 주권적 판단에 의해서 핵무기를 갖기 위해 NPT를 탈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예외 조항으로 있지만은 바람직한 조항으로 권장하는 조항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 뜻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NPT 회원국으로서 10조, 즉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농축우라늄의 그 정도를 높여서 20%급 이상은 확실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우리의 평화적 핵 활동과 우리의 핵 원자력 산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당연히 의당 취해야 될 정책적 방향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그동안 유지했던 국방부의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유지될 거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되 주한미군의 규모는 변동이 없어야 되고 확장억제력은 보장돼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며 우리 평화적 핵 활동은 오히려 확장돼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에 기하도록 하되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한반도의 비핵화,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국직부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저는 들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들어난 국직부대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있었고요. 아까 조직이나 인원이나 임무가 확대되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민주적 통제 장치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구조적 접근에서 아까 제가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임명과 그리고 징계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국직부대의 주요 인사들을 보면 수방사나 다른 부문도 포함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계엄과 관련된 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징계 관련해서도 아까 안규백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당한 명령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좀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명령을 그냥 이행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를테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인터뷰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했으나 나중에 보니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모르는 것도 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MZ 계엄군,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해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하면 사실은 민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장성급이나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이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경험들이 좀 부족하고, 반면에 초급간부나 일반병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도 이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육사 관련해서 이런 헌법과 민주시민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봤더니 이 과목이 전 정부에서 있었으나 이전 정부 개설 과목이라고 해서 폐지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영관급 이상의 장교들에게 리더십 교육,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어보니 헌법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주제의 교육과정을 거의 대부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군대라고 하면 그리고 헌법을 수호한다고 하면 이 민주주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각종 교육 체계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복지 정책을 전공하고 있었던 터라 이런 정신건강이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12·3 계엄 이후에 사실은 국민들도 이 계엄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마는 군인들은 그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12월 27일 날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즉시 군이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언론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즉시 국방부에 업무보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노력은 했으나 그때 당시로서는 적절한 교육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조치를 부탁드렸는데 감사하게도 그 두 가지 조치를 즉시 이행을 해 주셨고, 이미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가 토론회 진행 이후에도 몇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또 그 부분을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군인의 정신력은 국방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태가 있었을 때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공기 참사, 평상시에 대민 지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ADD 소장님!**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ADD 소장입니다.

○**부승찬 위원** 2023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연구 사업이 진행됐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32억 원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예, 맞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게 목적이 뭡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22년 말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에 대통령님 지시도 있었고 국방부에서도 그런 드론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우리가 상용품을 이용한 소형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방사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부승찬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연구 사업, 무기 획득 사업을 보신 적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통상은 이제 군에서 소요를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

○**부승찬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게 무기체계에 대한 획득 절차가 있을 거고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획득 절차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무기체계는 소요 제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소요군에 의해서 전력지원체계는 소요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부승찬 위원** 그거에 맞게 또 평가도 하잖아요. 시험평가도 하고 전투용 적합 판정이라든지 군사용 사용 판정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부승찬 위원** 그런데 이게 군사작전에 쓰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100대를 6개월 만에 신속하게 만들어. 여기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우리도 이런 능력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연구개발 사업이 아니에요. KAI랑 계약을 합니다. KAI랑 계약을 하고 KAI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모 업체를 통해서 100대를 생산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드론사에다 줘서 ‘작전에 써’ 이렇게 해서 관리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체계가, 획득 체계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무기체계 그다음에 전력지원체계, 그다음에 신속획득 사업. 그 이후에 하나가 더 들어와요, 중여. 그러면 중여 세라든가 내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것들을 군사작전에 써요. 그러니까 일반 이적이 나오는 거고 북풍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군사작전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법과 규정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부승찬 위원** 대체 이런 절차가…… 이거는 감사원 감사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이익을 준 게 아니라 모든 판을 다 깨버린 거예요.

어떻게 연구과제로 한 거를 드론사에다가 관리 전환을 하고……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연구과제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군사적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훈령이 있는 거고 방위사업법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행임무장치가 전부 중국산이야. 거기다가 중국산이야. GPS 중국산이야. 우리가 중국산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습니까? 지금 무인기 사업도 중국산이라고 해 가지고 국정감사 때 엄청 두들겨 맞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을 써요.

그다음에 합참에 보고도 안 해, 임무. 합참 보고 안 하고 그다음에 정식적인 법 규정

절차에 맞춰서 평가를 받아서 전력화가 된 전력도 아니고 암암리에 써.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리적인 뇌를 갖고 있을 때는 북풍이란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지적 못 하는 게 국회냐? 저는 동의 못 하지요.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지금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기체계 획득 사업이 아니고 전력지원체계 획득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적용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드론 전력을 전력화하면서, 위원님이 그건 너무나 잘 아실 건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의 경직성 때문에 신속하게 무기체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전력은 국방부에서 주도해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들을 국방의 방산협의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획득해서 작전부대가 운용을 하면서 그 성능을 개선해 나가고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부승찬 위원** 됐습니다.

한마디만 드릴게요. 다 이해하는데 이 사업의 명칭과 예산은요 ADD 연구개발 사업이에요. 신속획득사업이 아니고요 연구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ADD에서 보고한 목적이 명확히 있어요. 소형 무인기의 성능·한계 및 소모율 회수율 생존율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6개월 동안 대량 생산한다.

다른 거예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과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업 세목 부터가 아예 달라요. 예산 체계도 아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 다른 거를 갖다 맵니까? 제가 자료 다 갖고 있고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이 부분 부승찬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ADD가 기업들로부터 기술 이전해 주고 받은 기술료를 가지고 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국방부가 승인했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연구개발하는 ADD, 그거 하신 것은 맞고요. 이제 드론사에 들어가는 전력을 획득하는 사업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부승찬 위원** 아니, 멀쩡히, 드론사 전력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국가 예산을 쓴 게 아니잖아요. ADD가 자체적으로 기술료를 받은 거를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데 굉장히 심각하니까 드론 확보가 중요하구나 해 가지고 ADD 자체적으로 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30억 넘게 쓴 거예요. 그리고 운행도 하고 여러 실험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야전에서 필요하니 드론사로 넘긴 것 같다는 거지요.

ADD 소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왜 그러냐하면 부승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지점도 중요한데, ADD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용 자원이 있다 그러면 소장이나 운용하는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 예산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런 것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어땠냐는 거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한편 일리가 있지만 이 연구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국민들의 요구 사항들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있는 상용품을 최대한 동원해서 아주 저가로 그런 소형 무인정찰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험적인 시도였고, 연구개발 시도였고요. ADD 기술료를 통해서 만들었고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개발이 된 이후에는 이것을 표적기로 활용하든 또 숙달용으로 활용하든 다양한 활용성 중에, 물론 군 활용성도 교육용으로는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군에서 관리 전환을 요청해 온 것을 절차를 거쳐서 심의회에서 이관을 한 것입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그렇다고 중국산을 그렇게 씁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그러니까 중국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부분의 소재도 개선을 했고 엔진도 개선을 했고 또 비행조종장치 부분에서 중국산 저가를 쓴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중국산 쓰는 거는 각별히 아예 못 쓰게 하세요. 그것은 부승찬 간사님 지적이 옳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산이 가 가지고, 러시아한테 줬는데 러시아를 공격하는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다 국산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방위, 국방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사청장님,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드론뿐만이 아니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수를 하시고 대체품을 국산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지금 국과연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자체 절차에 의해서 규정대로 시행한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러나 아까 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다른 의도로 사용하게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물론 정상 궤도, 일반적인 틀에 있는 거지만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좀 더 있다라고 하면 제도적으로 한번 더 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면 꼭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마지막으로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대행님, 군단급 무인기 해론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GPS 교란으로 인해서 한 대 추락했지요, 세 대 중에?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희가 다양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원인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원인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보면 원인은 사단급 무인기 두 대는 위치값 오류로 떨어졌고 군단급 무인기 한 대는 고도값 오류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가 왔는데,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군단급 무인기 해론을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400억에 세 대를 구입했지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 쪽 이스라엘에서 구입한 게 맞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맞습니다.

○**강대식 위원** 지금 그러면 한 대는 추락을 해 버렸고 한 대는 고장이 나 가지고 우리 기술로는 못 고치니까 한 대는 작동을 못 하고, 그러면 세 대 중에 지금 한 대만 남았겠네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저희가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강대식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한 대를 가지고, 특히나 동해안 쪽으로나 이쪽에 정찰·감시가 가능하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정찰·감시 장비가, 군단급에 있는 그거 외에도 다양한 자산들 운용이 공백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물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공백 커버, 아무 문제성이 없다 이 말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할 자산들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합참의장님, 방사청장님, 항재밍 장치 업그레이드 문제 이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맞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합참에서는 그 필요성을 해서 각 군 총장들하고 합동참모회의를 통해서 지금 긴급 소요로 제기하는 중입니다.

○**강대식 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대행님, 2024년도 국방백서 발간이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국방백서를 조금 더 면밀히 보고 또 조금 의견을 더 수렴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게 다 완료되는 대로 준비해서 발간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국방부 내에서도 빨리 해야 된다, 좀 천천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런 의견은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조금 더 주변 의견을 들으라고.

○**강대식 위원** 이게 국방부가 너무 정치적인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도 탄핵 당시에도 바로 2017년도 1월 달에 국방백서를 발간했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백서 빨리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짧게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1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 저는 정정을 해야 됩니다. 1분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미애 위원 해병대사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예, 해병대사령관입니다.

○추미애 위원 제가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 직무대행님과의 사이에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는데 사안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이 정당한 명령이었느냐 또는 부당한 명령이었느냐 이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23년에 2건, 2022년에 2건, 각각 이렇게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복직을 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명, 혐의가 전부 파렴치범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성추행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파렴치범은 1심 무죄 후에 즉시 구제를 해 주고, 박정훈 대령의 경우에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했던 겁니다. 또 그게 무슨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거부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면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유족과의 약속, 또한 국민의 편에서 언론에 다 알리고 이걸 똑바로 수사하겠다고 했던 대언론 공개적인 약속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명을 거역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빠르게 군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부러진 이 상황을. 그렇다면 그걸 지금 차관님은 보셨다 시피 오늘 온종일 온갖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정말 몸이 열 개라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인 겁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해병대사령관님께 제가 판결문도 드리고 또 뭐 때문에 군 검찰이 항소했는지도 드리고 다 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답변 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정정할 게 있으시다고 그랬으니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대식 간사님께서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주장하는 국힘 위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질의가 좀 잘못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2월 6일 자 나경원 의원이 TV조선 인터뷰를 합니다. 그걸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완전 삭감한 것도요 어떻게 보면 경찰 무력화, 검찰 무력화, 대통령실 무력화, 그다음에 국방부 예산도 정찰예산만 삭감한다든지 아주 국방부를 무력화,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민주당 마음대로 지금 예산도 삭감해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명백하게 '국방 관련된 예산을 민주당이 삭감,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국방 예산은 상임위 예결소위하고 그다음에 예결위 예결소위에서 국방부가 동의한 예산만 삭감을 한 겁니다. 계약이 지연되거나 납품이 지연되어서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이나 집행이 돼야 될 예산만 국방부 동의하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거를 마치 민주당이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국방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더 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합참의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해군총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중 잠정수역 중간선이라는 게 있지요. 그 선을 놓고 중국이 그 선에, 우리 쪽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쪽에 부유물을 쭉 설치해 왔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우리도 우리대로 설치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일부 설치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의 해군력하고 맞서서 우리가 대등하게 싸우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해군과 해경이 분명하게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영해를 침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거의 몸싸움 하듯이 버티고 이겨 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지, 중국이 부유물 또 설치한다? 우리도 설치합니다. 다만 몸싸움을 하되 서로 총구를 겨누는 군사적인 직접 충돌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상황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어렵고 힘들지만 버텨 내고 이겨 내고 지켜 내고 있다. 우리 군이 중국에게 밀리지 않고 이겨 내고 버텨 내고 지켜 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지 중국이 한 방 툭 친다고 해서 밀려나는 대한민국 해군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력도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의장님, 해군총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해양에서 국익을 준수한 비례적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다음에 미국 핵잠수함의 위치정보 우리하고 공유합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안 하지요.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요코스카 앞에 있는지, 필리핀 해구에 있는지, 제주도 남방에 있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략자산의 전개라고 해 가지고 방위비 협상에 반영을 한다? 그거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500% 인상하라고 했는데 11%로 버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우리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 1000% 이야기하지만 이미 협상 끝냈고 잘 버텨 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저희들 기존에 가졌던 입장과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상으로 재보충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과 국방부 등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의견들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이 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4항까지 11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법안소위 직접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7753호와 제7840호, 2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서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부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를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방부와 예하부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의 안보 위협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물풍선과 관련된 분석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서 연구용역보고서가 지금 국회에 와 있습니다.

각 부대에서 이 부분을 수령하셔서 합참을 비롯해서 작전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님 또 김종철 병무청장님,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률안심사(7인)	◎부승찬 김병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4)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허 영	
	윤상현 임종득 한기호	국민의 힘(3)
예산결산심사(8인)	부승찬 안규백 조승래 추미애 황희	더불어민주당(5)
	◎강대식 강선영 임종득	국민의 힘(3)
청원심사(5인)	◎추미애 김민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3)
	강선영	국민의 힘(1)
	백선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회임

### ○출석 위원(17인)

장대식 강선영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박찬대 백선희 부승찬 성일종 안규백  
윤상현 임종득 조승래 추미애 한기호 허영 황희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인사복지실장 김수삼  
기획관리관 김경숙  
계획예산관 신태복  
지능정보화정책관 염주성  
법무관리관 홍창식  
감사관 성기욱  
정책기획관 윤봉희

국제정책관 이승범  
방위정책관 곽태신  
인사기획관 오영대  
동원기획관 김신숙  
보건복지관 김은성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근혜  
전력정책국장 원종대  
첨단전력기획관 최장식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명수  
작전본부장 이승오  
육군본부  
참모총장직무대리 고창준  
정책실장 김홍준  
해군본부  
참모총장 양용모  
정책실장 박순식  
공군본부  
참모총장 이영수  
정책실장 구상모  
해병대사령부  
사령관 주일석  
정책실장 이동향  
병무청  
청장 김종철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인환  
병역자원국장직무대리 정재숙  
입영동원국장 문경식  
사회복무국장 임재하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조현기  
미래전력사업본부장 한경호  
기획조정관 홍미루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일동  
국방기술보호국장 한경수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 【보고사항】

#### ○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범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2025. 1. 6.
유용원	윤상현	국민의힘	2025. 2. 4.
-	백선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24. 12. 27.

#### ○ 의안 회부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11월 28일 회부됨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이상 2건 11월 29일 회부됨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2024. 11. 29.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6)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7)

#####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1. 29.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0)

이상 4건 12월 2일 회부됨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2)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3)

이상 2건 12월 3일 회부됨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8)

12월 4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5)

이상 3건 12월 6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이상 8건 12월 9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1)

이상 3건 12월 10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7)

이상 7건 12월 11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1)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이상 6건 12월 12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이상 5건 12월 13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12월 13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이상 6건 12월 16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이상 6건 12월 17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이상 9건 12월 18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이상 4건 12월 20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7)

이상 5건 12월 23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12월 24일 회부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0)

이상 2건 12월 26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7)

12월 27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이상 3건 12월 30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0.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12월 31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4)

2025년 1월 2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이상 3건 1월 7일 회부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4)

1월 9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9.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9.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9.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9.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5)

이상 4건 1월 10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0.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7)

1월 13일 회부됨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2025. 1. 13.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3.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이상 2건 1월 14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6.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6.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3)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6.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6.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1)

이상 4건 1월 17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1)

1월 20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7)

1월 21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3)

1월 23일 회부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8)

이상 4건 1월 24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4)

이상 3건 1월 31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3)

2월 3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군급식법안**

(2025. 2. 6.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0)

이상 3건 2월 7일 회부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2)

2월 10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2024. 11. 28. 이언주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206032)

11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1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이상 2건 12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2)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7)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8)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5)

이상 7건 1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0)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5)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0)

이상 3건 12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2024. 12. 13.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8)

이상 2건 12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12. 1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4)

12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5)

12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2025. 1. 17. 이종배 의원·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5)

1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8)

이상 2건 1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 23.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5)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 2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6)

이상 3건 1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 2. 6.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1)

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5. 2. 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9)

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소위원회 직접 회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1월 2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1월 31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 청원 회부

군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및 노후된 차량 교체 및 군장병 수송은 일반 승합차로 이동할 것에 대한 이동 지침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 (2025. 1. 8. 정00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0)

1월 9일 회부됨

### ○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069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국방부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197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025. 1. 17.
국방부령	제1168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025. 1. 17.
대통령령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국방부	2025. 1. 21.

### ○ 보고서 송부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 보고

(2024. 12. 10. 국방부장관 제출)

12월 13일 송부됨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2024. 12. 26. 국방부장관 제출)

12월 27일 송부됨

### ○ 보고서 제출

#### 군 책임운영기관 2025년도 운영지침

(2024. 12. 9. 국방부장관 제출)

#### 헌법소원심판회부 통지문 송부

(2024. 12. 23. 헌법재판소장 제출)

#### 25-29 국방증기계획 국회 보고

(2024. 12. 30. 국방부장관 제출)

#### 2024년 4분기 군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제출

(2025. 1. 3. 국방부장관 제출)

#### 2025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제출

(2025. 1. 3. 방위사업청장 제출)

#### 군인연금기금 자산운용지침 제출

(2025. 1. 7. 국방부장관 제출)

#### 2024년도 4분기 이·전용 내역 제출

(2025. 1. 9. 병무청장 제출)

#### 2024년도 4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및 50억 이상 세부사업간 조정명세서 제출

(2025. 1. 15. 방위사업청장 제출)

#### 2024년 행정기관위원회 운영현황 제출

(2025. 1. 20. 국방부장관 제출)

**헌법소원심판회부 통지문 송부**

(2025. 1. 22. 헌법재판소장 제출)

**2024년 방위비분담금 관련 문서 국회 국방위 제출**

(2025. 1. 24. 국방부장관 제출)

**2024년도 4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내역 제출**

(2025. 1. 31. 국방부장관 제출)